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저마다의 빛깔로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

일시 2019. 8. 27.(화) 13:30~17:30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저마다의 빛깔로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

일시 2019. 8. 27.(화) 13:30~17:30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

- 일시: 2019. 8. 27.(화) 13:30~17:30
-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
- 좌장: 정강자(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부: 혐오표현 개념과 실태	
13:3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말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표 1 혐오표현 개념과 문제: 한상희(건국대학교 교수) · 발표 2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과 대응방안: 강문민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2부: 언론과 혐오표현	
14:30~1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1 미디어와 혐오표현: 김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발표 2 혐오표현 규제와 방송통신심의: 윤성욱(경기대학교 교수) · 패 널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 김동훈(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한겨레신문 기자)
15:40~15:50	휴식(10분)
3부: 교육현장과 혐오표현	
15:5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이은진(서울발산초등학교 교사) · 패 널 김영준(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변예진(아수나로, 불꽃페미액션 회원) 이주현(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17:00~17:30	· 종합토론

인사말

반갑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이 점점 더 확산되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 강남역 근처에서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은 예멘 난민신청자 반대로 이슬람 혐오가 난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제정을 반대하거나 시행 중인 조례의 폐지까지 주장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혐오와 차별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재생산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합니다. 저는 지난 해 9월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을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굉장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초 혐오차별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등 25명의 전문가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산되는 혐오표현의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3월과 5월에 국민인식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경험자의 절반 이상은 위축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혐오표현으로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도 10명 중 7~8명이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이 혐오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혐오표현 예방책으로는 언론의 혐오조장 자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인식조사에서 강조되었던 언론과 교육 분야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편견에 맞서 차별 없는 사회를 외쳐온 여러분들과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할 길을 찾고자 합니다. 생생한 인권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언론과 교육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것은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봅니다. 편견을 없애는 것이 곧 혐오표현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풀어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저마다의 빛깔로 마주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좌장을 맡으신 정강자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각 세션별 발제 및 토론을 맡으신 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목 차

1부: 혐오표현 개념과 실태	7
발표1 혐오표현 개념과 문제 한상희(건국대학교 교수)	9
발표2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과 대응방안 강문민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23
2부: 언론과 혐오표현	43
발표1 미디어와 혐오표현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45
발표2 혐오표현 규제와 방송통신심의 윤성옥(경기대학교 교수)	69
패 널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	92
김동훈(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한겨레신문 기자)	100
3부: 교육현장과 혐오표현	105
발 표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이은진(서울발산초등학교 교사)	107
패 널 김영준(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116
변예진(아수나로, 불꽃페이액션 회원)	120
이주현(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124



1부: 혐오표현 개념과 실태

발표1 혐오표현 개념과 문제

한상희(건국대학교 교수)

발표2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과 대응방안

강문민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혐오표현 개념과 문제

한상희(건국대학교 교수)

2019. 8. 27.

이 글의 내용은 공동연구팀이 현재 진행중인 작업의 중간보고서를 발췌하여 적의 수정한 것으로, 인용하실 때에는 사전에 발제자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의 역사, 혐오의 현실



에필드경제

여경이었던 권은희 의원 “여경 체력·진압능력 재고해야 할 시기”

기사입력 2019-05-21 08:05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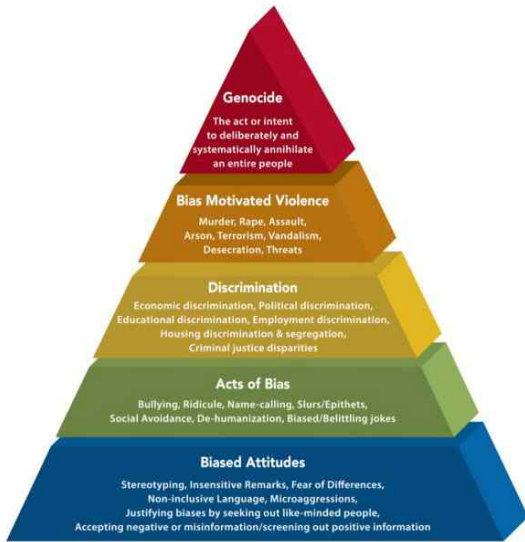
[에필드경제=모바일섹션] 경찰 출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대림동 여경’ 영상과 관련해 “여경의 체력과 진압능력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재고해야 하는 시기”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여경이) 놓고 있는 건 분명한데 내근직을 선호한다는지, 현장 근무를 맡겨줘야 하는지 아닌지는 분위기가 현실로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여경의 역할과 위상, 능력과 관련해서 경찰이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때다”라고 밝혔다.



PYRAMID OF HATE



혐오의 구조화

혐오의 평범성
 (“사유하고 판단하지 않는 시민...”)

묵인, 방임, 방치, 방관

우리 사회에 혐오의 등장: 통치의 수단

- 1948년체제: “빨갱이” 담론
 - 반공국가의 지배수단
 - 일제강점기: “불령선인 (不逞鮮人)” - “비(非)국민”
 - 체제에의 순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공격수단
 - 낙인찍기로 *homo sacre* 화: 빨갱이 - 반대세 - 중복좌파

- 지역주의: 군사정권의 정치전술
 - 연고주의 문화 + 지역기반의 권력배분체계 + 지역단위의 정경유착
 - 권력의 획득수단이자 권력의 배분기준; 강제된 자발적 순응

- 가부장적 권위주의
 - 조악한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주의 ← 가부장체제
 - 국가가 결정하는 “사회윤리”: 성별, 연령 혹은 “가정의례준칙 ”

우리 사회에 혐오의 등장: 양극화

- 민주화 + 산업화
 -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소외된 계층들의 불만 혹은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 이를 해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서의 소수자집단들 → 다름과 차이를 열등함, 불결함, 혹은 위험함의 징표로 제시
 - 다양한 평등실현조치들 혹은 소수자들의 역량강화 → 상대적 박탈감을 “역차별”로 포장, 공격
 - 1999년 군가산점제 위헌결정 → 2001년 월장 사태

- 급속한 정보화
 - 1995년 전자정부 11대과제 → 정보고속도로: 콘텐츠 부재의 H/W만의 확산 → 사이버공간의 “해방”
 - 2002년 대통령선거: 인터넷의 영향력 확인 → 보수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조직화
 -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 반대운동 또한 인터넷상으로 조직
 - 2014년 일베, 그리고 현재의 단톡방과 유튜브

우리 사회에 혐오의 등장: 그 구조

- 이중강화에 의한 포퓰리즘화
 - 사회적 편견 + 정치적·경제적 동원의 필요성 → 혐오현상의 상당부분이 포퓰리즘적 성향을 띠게 됨
- “다수자집단”
 - 혐오를 사회적 “다수자집단”에 의한 억압이라 규정할 수 있다면, 역으로 혐오는 이들의 이익에 부합할 때 비로소 형성, 발현 가능
 - 이때 다수자집단은 여성에 대한 남성, 무슬림에 대한 비무슬림이 아니라,
 - 그러한 낙인찍기와 그 낙인에 의한 소수자집단을 구축할 수 있는 권력의 존재로 판단되어야 함: 필연적으로 사회적 권력(정치권력, 경제권력 혹은 사회적 자본을 갖춘 언론·지식인 권력)
- 제주난민:
 - 일부 기독교세력 + 이에 편승하는 정치권력 + 값싼 노동력을 추구하는 경제권력의 복합체
 - 이슬람포비아 현상(편견과 낙인)이 부재하던 우리 사회에 무슬림_이주노동자 혐오를 새로이 형성, 부과하는 방식
 - 제도언론은 이들의 연결을 매개하는 고리 역할

우리 사회에 혐오의 등장: 그 구조

- 혐오의 악순환 구조
 - 오프라인에서의 현상 → 온라인에서 소수의 선동 → 기존 언론의 재생산 → 온라인에서 확산 → 정치세력에 의한 인용, 동원 → 기존언론이 공식적인 사회의제화 → 오프라인에서의 낙인, 배제
- 이런 구조로 인하여 대항언론 혹은 교육·홍보라는 대응수단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
 - ACLU의 실패(?): Brandenburg 사태발생 5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KKK와 같은 racist들은 여전히 세력을 보전하고 있음
- 혐오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 이 연결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정치인, 제도언론, 특정종교집단 등
 - 특히 연결고리들이 정치, 사회(언론), 경제 영역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임
 - 일부 집회·시위 전담 조직에 대하여는 public forum으로부터의 차단방안을 고려할 필요

혐오의 해악: 인권의 가치 침해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
 - 인간을 “짓밟을 수 있는 등급”(vertretbare Größe)으로 비하하고 멸시
- 혐오의 사유:
 -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변경불가
 - 혐오행위로 인하여 공포감, 위축감, 스트레스 → 무력감 → 자기부정, 정체성희의
- 집단 수준의 위해
 - 개인적인 자기부정 뿐 아니라 그 속성 자체에 대한 부정 내지는 그러한 속성을 공유하는 집단 자체도 부정
 - 개인적 노력으로 일정한 계층상승, 지위상승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된 계층, 지위와 혐오대상인 속성 자체를 변경하지 않음
 - 결국 원래로 회귀하거나 자신의 집단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 누적, 강화
 - 사회적 계도의 형성
- 결국 인간성 자체를 부정 → 인권의 가치 부정

혐오의 해악: 개인적 인권의 침해

-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혐오는 차별의 결과이자 원인
- 그러나 개념본질상 단순 차별 이상의 악영향을 가짐
 - 차별사유에 대응하는 차별이 아니라 차별과 무관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한 **포괄적 차별**
 - 양상도 낙인찍기와 배제의 형식이며 이는 동종 및 이종의 차별을 재생산: **차별의 질적 강화**
 - 속성이 “인식”되는 한 **영속적 차별**
- 결국 혐오는 넓은 의미의 Racism:
 - 다수자들에 의하여 일방적, 획일적으로 부여된 특성과, 그 속성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구획된 “집단성”에 기반하여 낙인찍기 + 포괄적 배제라는 집단심리와 행동이 발생

혐오의 해악: 개인적 인권의 침해

-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혐오: 대상자들로부터 일정한 사회적 지위나 자격이나 권리·자유들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행위 → 대상자들의 삶을 구성하는 일정 요소들을 제한하거나 훼손하거나 혹은 박탈 →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공포를 야기
 - 난민 혐오: 원래의 박해에 새로운 공포와 위협을 가중
 - 이주민 혐오: 원래의 경제적 위기에 실업, 폭력, 혹은 축출이라는 공포 야기
- 인격권
 - 혐오대상자의 자존감, 명예의식, 사회적 신용
 - 그 “속성”을 벗어나도록 강요당함으로 인한 인격형성권과 발현권까지도 침해

혐오의 해악: 그 외 타깃이 되는 인권들

- 생활공동체나 직장, 교육시설 등으로부터 배제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하여 등 일상생활을 수행할 권리와 함께 그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까지도 현저하게 침해
 - 거주이전의 자유(세계인권선언 제12조, 헌법 제14조),
 - 직업과 노동의 자유(선언 제23조, 헌법 제15조, 제32조),
 - 정당한 보수 등에 대한 권리(헌법 제32조),
 -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선언 제26조, 헌법 제31조),
 - 문화적 활동에의 참여권(선언 제27조, 헌법 제9조)
 - 종교를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제20조) 등
 -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선언 제16조, 헌법 제36조제1항)
 -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선언 제22조, 제25조제1항, 헌법 제34조, 제35조),
 - 사생활의 자유(선언 제12조, 헌법 제17조)

혐오의 해악: 민주사회의 통합 저해

- 민주주의는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사회의 구성원리
 - 이 민주주의는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전제로 그것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공공 영역을 바탕으로 구성
 - 과소대표현상: 발언권과 대표권 박탈
 - 공포와 위축효과: 발언권 제한 또는 발언의 효과 저해 → 공론의 장 왜곡
 - 과다대표현상
 - 혐오대상자들을 침묵시킴으로써 다수자 자신의 목소리만 들리게 함
 - 결국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다양성 침해

- 아울러 민주사회의 통합을 저해
 - Racism적인 사회분열 야기, 계도화
 - 임시정부 이래 우리 사회가 추구해 왔던 “공화”의 이념은 여기서 훼손됨

- 파농이 ‘흑인에게는 백인이라는 단 하나의 운명만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게이트 밀레트가 ‘여자의 운명은 여전히 남자’라는 사실을 분석하고 고발했을 때,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장사는 유대인의 직업이 아니라 그 운명’이라고 항변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타자라는 뜻이며, 그 타자의 일상적 타성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뜻이다.(김영민)

혐오표현의 개념화

- 혐오표현(Hate Speech)?
 - 혐오(증오)범죄의 현상도 존재하지만 그 해악성을 고려할 때 혐오범죄의 “전”단계이자 보다 포괄적인 혐오표현을 문제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혐오행위도 존재하나, 이 또한 “행위”성 보다는 그 행위에 담겨 있는 낙인찍기와 배제의 의사가 본질적
- 혐오표현의 개념화?
 - “혐오표현”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종합개념
 - 따라서 그 개념의 구성은 그때그때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조작적으로 (operational)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혐오표현의 개념: 세 요소

- ① 부정적인 편견·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특정 속성을 지정하고 이 속성을 바탕으로 일부의 사람들을 구획하여(zoning) 집단으로 구성하며
- ② 이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폭력을 선전·선동하는,
- ③ 제반의 표현(행위)들
 - 부가적 요소로 ④ 그 표적이 되는 대상 집단에 대한 기존의 차별의식을 정당화하거나 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혐오표현이란?

▪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다음 행위를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하여 모욕·비하·멸시하거나,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 2)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을 차별과 폭력에 동참시키는 행위

혐오표현의 개념: 특정 속성을 부여하여 집단화함

- 속성
 - 이 속성은 그 대상자의 전생활, 전인격 중의 어느 부분만을 추출하여 사회적으로 가공한 것
 - 인종, 민족지(ethnicity),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나이, 출신지역 등
 - 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주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혹은 당대의 지배담론 등에 의하여 그때그때 ‘구성’됨
 - 시·공간을 따라 상대적인 개념
 - 다만 “소수자”의 성격은 주요한 개념요소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일신전속성
 - 대체로 혐오대상이 되는 속성은 그 당사자의 정체성 혹은 인격의 훼손 없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짐
 - 사회경제적 속성?

특정 속성을 부여하여 집단화함

- 집단
 - 이 집단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가공의 상상적인 것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의율대상이 아닌 이유
 - 따라서 대상자의 집단 귀속성이나 집단의식 등과는 무관하게 구성되고 또 작동함
- 결국 ‘속성 + 집단’의 개념은 낙인찍기의 또 다른 표현일 따름

혐오표현의 개념: 부정적 관념 · 편견

- 혐오표현은 그 표적이 되는 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나 편견을 담고 있음.
 - 단순 묘사, 중립적 설명이 아니라 일정한 평가행위가 개재
 - 이때의 평가는 부정적 관념, 편견(prejudice, bias)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대상 집단에 대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기반함
 - 때로 긍정적인 평가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혐오표현에 해당될 수 있음 (예. “흑인은 신체능력이 뛰어나다.” - 굳이 일정한 속성을 부여하고 있음)
- “과학적” 혹은 “이론적” 형식의 혐오표현도 존재함
 - 학문적 견해, 과학적 증거, 사실 보도의 외형을 띠기도 하고 학문적·정치적 논쟁이라고 주장되기도 함
 - 왜곡된 자료, 편향된 분석틀 등을 이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 연구자의 중립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연구모델의 설정 자체가 편향성을 안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음

혐오표현의 개념: 언동 등의 표출행위

-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적대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언동(言動)
 - 상징적 표현
 - 무시, 침묵 등도 해당
- 의견과 사실?
 - 법리학의 영역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엄밀히 보자면 사건의 “인식”작용
 - 사실 자체가 허위일 수도 있음
 - “진실”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후 맥락을 제거하거나 상황을 이용하여 혐오의 내용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음
 - 예: “흑인의 범죄율이 높다”
 - 통계, 수치 등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실관계 역시 마찬가지
 - 통계의 목적이나 조사대상 및 방법의 선정, 분석방법의 선택, 그 해석의 준거 등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혐오표현의 개념: 차별지속 · 조장효과

- 차별의 효과
 -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제도적·정책적 차별을 정당화 하거나
 - 차별적 제도·정책이 만들어지게 하면서 기존의 차별 상황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효과,
 - 대상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거나 일상화된 차별 상황을 수용하고 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 등
- 따라서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대상 집단과 사회에 어떠한 차별 조장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
 - 이 효과가 없는 경우 차별일 수는 있어도 혐오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예: 강자, 다수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

혐오표현의 유형

- 모욕형 혐오표현:
 - 대상자·집단을 모욕(insulting), 비하(degrading), 멸시(abusive), 위협(threatening) 하는 표현
 - 대체로 대상자 또는 그 속성이 열등하거나 비위생적(비생산적)이거나 혹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로 일반화
 - 개인적 인식이나 평가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의식을 강화함
- 선동형 혐오표현:
 - 차별·폭력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
 -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여 대중들의 증오심을 고취하고 그들이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거나, 조장, 선전, 선동
 -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의도한 경우가 대부분
- 양자가 혼용되는 경우도 많음

역사부정과 혐오표현

- 역사부정
 - 집단대상의 반인륜적인 범죄사실을 부정하거나 경시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정당화하는 행위
 - 대체로 반인륜적 범죄들은 소수자(집단)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를 부정하는 행위들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음
- 우리의 경우
 - 5·18부정이나 민주화운동 왜곡, 4·3사건 왜곡 등은 이에 해당함
 - 특히 5·18부정의 경우는 반공주의와 지역주의가 복합되어 그 반인륜성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한국전쟁을 달리 보는 것도 역사부정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도 있으나, 역사부정은 전쟁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쟁(또는 그 과정)에 내포된 반인륜성의 부정이라는 문제임

혐오표현, 그 대응

• 대응 방식

- 혐오표현은 맥락성 속에서 규정됨: 그 해악성의 정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함
- 직접 표현을 규제하는 경우
 - 혐오범죄 또는 이의 선전·선동: 범죄화, 가중처벌,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화
 - 공공영역, 언론, 정치적 맥락에서의 혐오표현: 행위규제, 방법규제(법적 규제)
 - 사적 영역, 준 공개영역(단톡방 등): 자율규제(법외적 규제)
 - 피해자 특정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가처분 등, 혹은 집단소송
- 교육·홍보 등 환경조성의 경우
 - 교육, 홍보, 지원, 조사·연구,
 - 운동의 조직, 반혐오시민단체 등의 조직화, 네트워크화
 - 대상자·집단의 대항(언론) 역량의 강화

혐오표현대응: 그 전제

- 분명한 것은 국가(지자체 포함)의 역할
- 무엇이 사회적으로 금지되거나 통제되어야 하는 혐오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차별금지법, 양형기준, 수사준칙 등
 - 무엇이 혐오표현이며 그것의 사회적 해악이 왜 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 대항(언론)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
 - 대항표현이 혐오에 대한 교정과 치유라는 대항의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혐오대상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연대하여 함께 대항하는 시민사회 전체의 역량
 - 국가는 언론접근권 등의 보장과 함께, 그러한 대항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NGO 들의 연대, 네트워킹을 위한 조직화
- 공적 포럼(광장, 도로, 공공기관부지 등)에서의 혐오표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결론

우리 사회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혐오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인권이 최우선적인 가치로 자리 잡은 현 시대의 당면과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이 과제를 떠맡아야 하는 것은 국가이다. 국가주의적 개입이 아니라 혐오현상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설득의 주체가 국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 전초의 성격을 가진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가 혐오의 현실을 직접 대면하며 그에 맞서 싸우는 일이 남아 있다. 수없이 많은 장애와 난관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깨쳐 나갈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강고한 의지와 선도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과 대응방안

강문민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1. 혐오의 확산과 일상화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가 혐오표현이다. 2010년대 초반 일간베스트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출된 여성 등에 대한 혐오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다. 여러 언론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실시한 각종 실태조사에서, 국민의 10명 중 7~8명 정도가 혐오표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 2018년 인천 퀴어문화축제 사건 등은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례들이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털 사이트의 차별·비하 시정요구도 급증했다.

[표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유해정보 중 차별·비하 유형

(단위 : 건수)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심의	752	861	1,184	3,022	1,356	2,638
시정 요구	622건 (82.7%)	723 (84.0%)	891 (75.3%)	2,455 (81.2%)	1,166 (86.0%)	2,352 (89.2%)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 연감 2013~2018년 통계 재구성

사회 전반에서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발화되고 확산되면서 혐오표현의 일상화·전면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차별을 조장·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혐오표현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혐오표현 대응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인식

1)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인권위가 지난 3월에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표현 경험과 인식조사(이하 “국민인식조사”)¹⁾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가 혐오표현을 경험하였다. 혐오표현의 대상으로 특정지역출신(74.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58.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80.7%), 30대(71.1%), 40대(63.6%) 등과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표현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지난 5월에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하 “청소년 인식조사”)²⁾에서도, 10명 중 7명 정도의 청소년이 혐오표현을 경험하였다(68.3%). 여성(63.0%)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접하였으며, 그 다음이 성소수자(57.0%) 등의 순이었다. 또한 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 응답자의 82.9%가 SNS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하였으며, 온라인 활동유형 중에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80.0%)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에서(57.0%), 친구(54.8%)로부터 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혐오표현 사용자가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17.1%나 되었다.

1)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19년 3월 20일~22일(3일간)에 성인 1,200명(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고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p

2)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19년 5월 9일~14일(6일간)에 전국 거주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p

[그림1] 청소년의 혐오표현 경험 - 장소 및 주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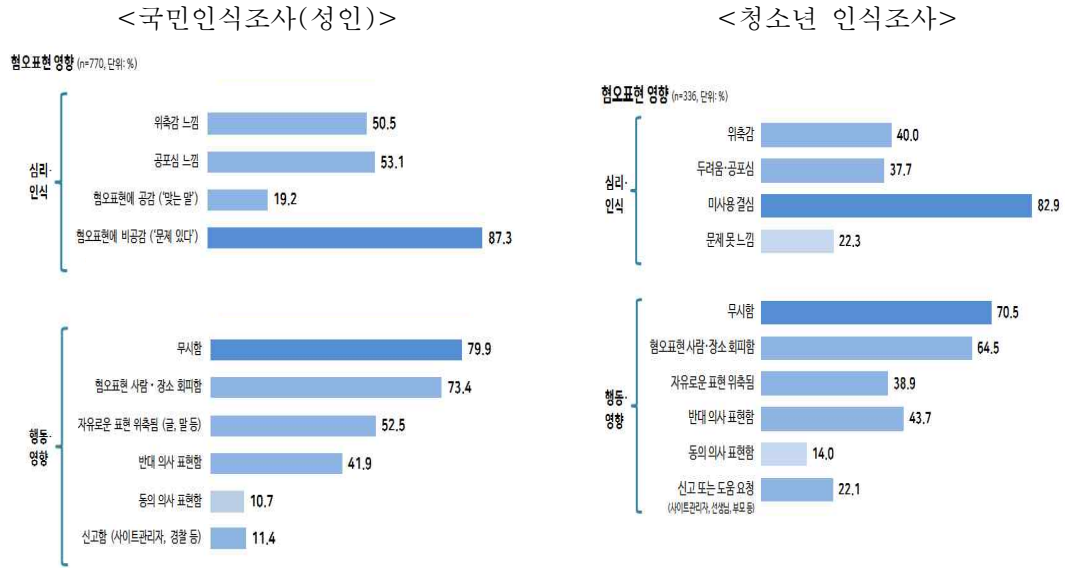


2) 혐오표현의 영향과 대응방식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혐오표현 경험자의 과반수 이상이 위축감이나(50.5%), 공포심(53.1%)을 느끼고, 상당수(87.3%)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반대의사 표현(41.9%)보다는 그냥 무시하거나(79.9%), 혐오표현 발생장소나 사용자를 피하는(73.4%) 등 주로 소극적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혐오표현이 개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내는 한편, 피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정적 차원의 혐오표현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혐오표현에의 부정적 영향과 소극적 대응의 경향이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혐오표현을 접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청소년이 10명 중 8명에 달하지만(82.9%),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22.3%에 이른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혐오표현의 문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2] 혐오표현의 영향



3) 혐오표현 사용 경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중 1명(9.3%)이 혐오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특정한 일부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혐오표현 사용자 본인이 혐오표현이라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청소년의 경우, 혐오표현 사용 경험이 성인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4명 중 1명 정도가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23.9%).

[그림3] 혐오표현 사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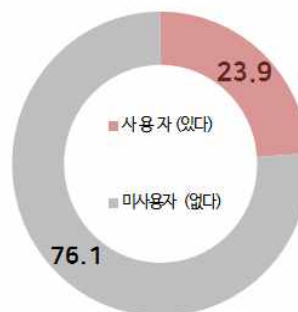
<국민인식조사(성인)>

혐오표현 사용 여부 (n=1200, 단위: %)



<청소년 인식조사>

혐오표현 사용 여부 (n=5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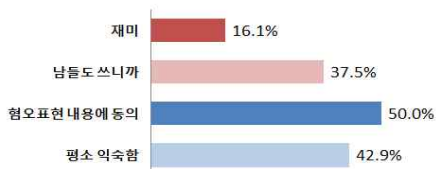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그림4]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혐오표현 사용자의 과반수 정도가 혐오표현의 내용에 동의한다거나(50.0%) 평소에 익숙하기(42.9%) 때문에 혐오표현을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한편, 성인의 경우 ‘재미’의 차원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6.1%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의 경우, ‘재미나 농담’, ‘남들도 사용하니까’라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었다(53.9%). 청소년에게 혐오표현은 ‘재미’나 ‘농담’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4] 혐오표현 사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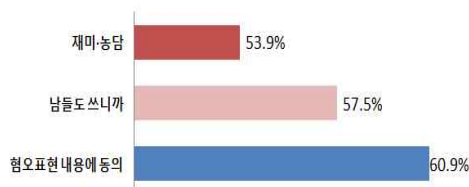
<국민인식조사(성인)>

혐오표현 사용 이유 (n=112, 단위: %)



<청소년 인식조사>

혐오표현 사용 이유 (n=1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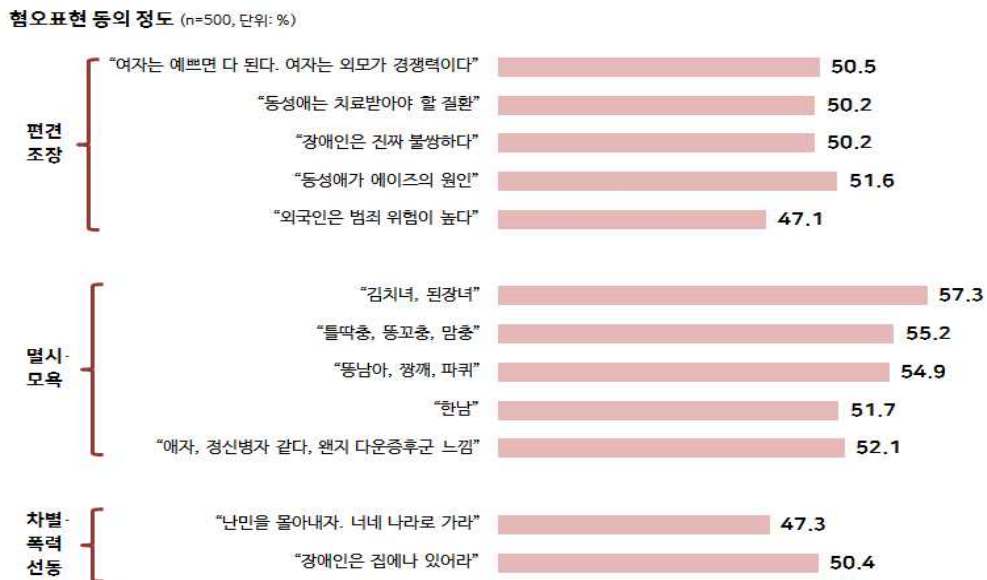


4) 혐오표현 유형별 인식과 원인 판단

국민인식조사는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혐오표현 유형별 예시문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멸시·모욕적이거나(60~63%), 편견을 조장하거나(55~57%),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56~58%) 유형들 모두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혐오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혐오표현 유형 중에서, “~충”과 같이 멸시나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할 질환” 등과 같이 편견 조장 표현에 대한 인식 수준이 특별히 낮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혐오표현 유형별 인식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편견 조장(47.1~51.6%), 멸시·모욕(52.1~57.3%), 차별·폭력 선동(47.3~50.4%)과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절반 가까이가 혐오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은 범죄 위험이 높다”, “난민을 몰아내자, 너네 나라로 가라”와 같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각기 47.1%, 47.3%로 다른 항목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났다.

[그림5] 혐오표현 유형별 동의 정도 (청소년 인식조사)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10명 중 7~8명 정도가 혐오표현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77.4%), 가짜뉴스(72.3%),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68.8%) 등을 지목하였다. 혐오표현 확산의 주요 요인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6] 혐오표현 원인 동의 (국민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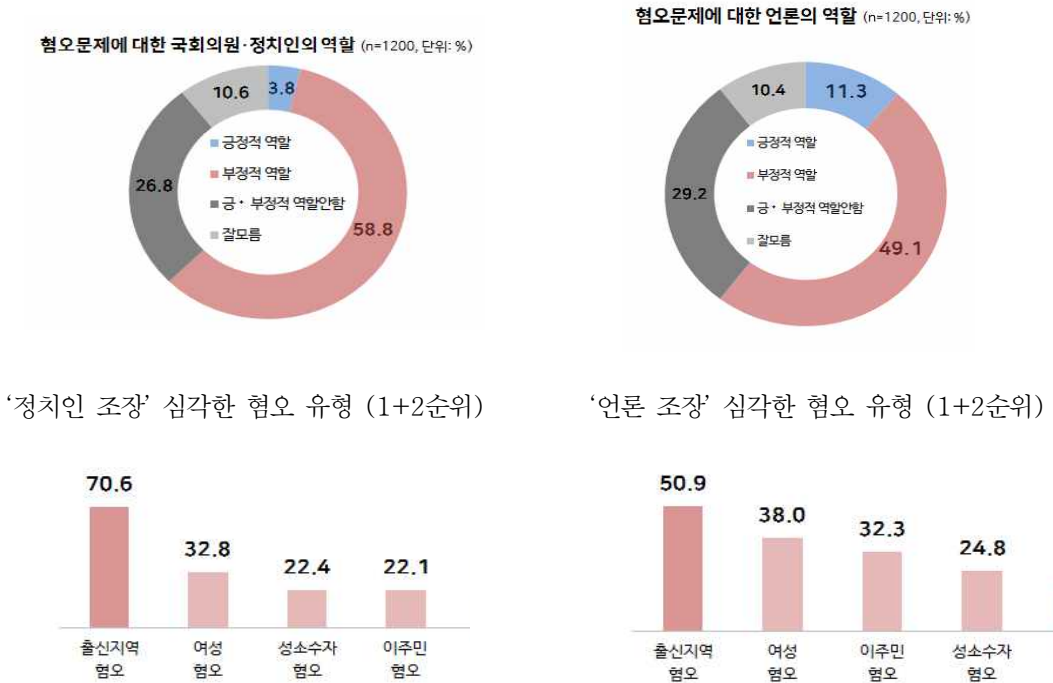


5) 정치인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판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58.8%)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상집단으로, 특정지역출신(70.6%), 여성(32.8%), 성소수자(22.4%), 이주민(22.1%) 등을 지목했다. 특히, 정치인이 혐오표현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58.8%)이 혐오표현을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의견(3.8%) 보다 무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이 혐오표현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응답이 49.1%로 나타났고, 언론의 주된 혐오표현 대상집단으로 특정지역출신자(50.9%), 여성(38.0%), 이주민(32.3%), 성소수자(24.8%) 등을 지목하였다. 특히, 언론이 혐오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49.1%)이 혐오를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의견(11.3%)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7] 혐오표현과 정치인 및 언론 (국민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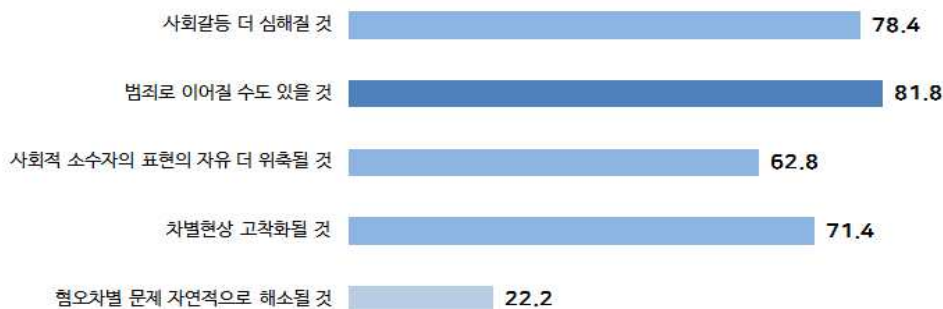


6) 혐오표현 전망과 대책에 대한 태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혐오표현을 방치했을 때의 위험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81.8%), 사회갈등 심화(78.4%), 차별 고착(71.4%),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62.8%) 등을 우려하였다. 반면, 혐오표현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은 22.2%에 불과하였다. 청소년 인식조사에서도, 혐오표현의 자연적 약화 전망에 대한 동의는 15.3%에 그쳤다. 이러한 인식은 혐오표현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태도와도 연결된다.

[그림8] 혐오표현 전망 (국민인식조사)

혐오차별 관련 전망 동의 정도 (n=1200, 단위: %)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그림9]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응답자가 혐오표현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정책들에 높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언론의 혐오조장 표현이나 보도 자체(87.2%)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혐오표현 관련 언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결과([그림7] 참조)와도 연결되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표본수가 크지는 않으나, 2018년 <혐오표현 예방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에서 언론사 기자(44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³⁾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3.6%가 혐오표현 관련 교육훈련 기회제공이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기회가 있다는 응답은 13.6%에 그쳤다. 언론은 혐오표현을 촉발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를 시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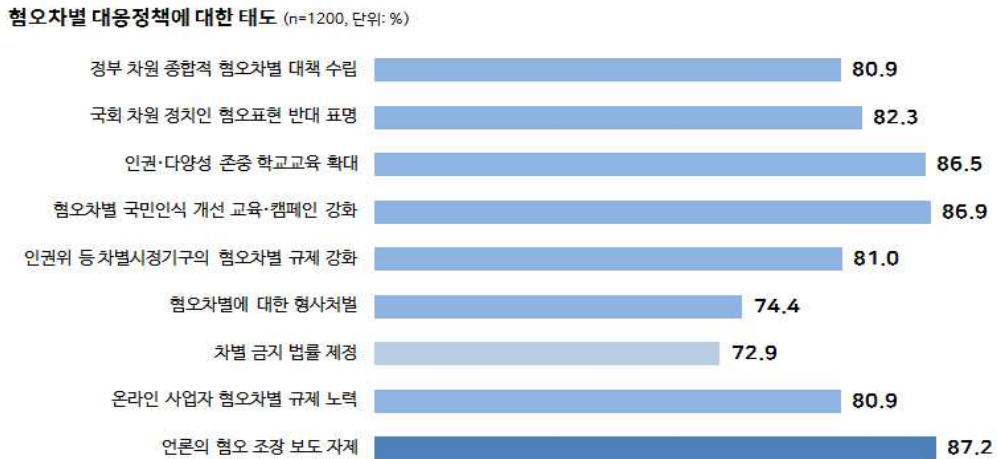
언론 다음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던 대응정책이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86.9%), 인권존중 학교교육 확대(86.5%)였다. 특히, 인권교육 확대에 대하여 ‘매우찬성’ 의견이 과반수에 이르렀다(50.4%). 하지만, 2018년 <혐오표현 예방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에 참여한 초·중·고등학교 교사(60명)의 45.0%가 학생 대상 혐오표현 교육이 없다고 응답하였고(‘있다’ 응답은 35.0%), 교사 및 직원 대상 교육 기회가 없다는 응답이 60.0%로 나타났다(있다는 응답은 31.7%).⁴⁾

3) <혐오표현 예방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운영의 주요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203명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사 60명, 대학교 교직원 45명,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직원 54명, 언론사 기자 44명으로 구성됨(홍성수 외,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8, 74쪽).

4)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보고서>, 2018, 92쪽

한편, 정치인의 혐오표현 반대표명(82.3%), 차별시정기구의 혐오차별 규제 강화(81.0%),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80.9%), 온라인 사업자 자율규제(80.9%) 등의 정책에 대하여도 높은 정도의 동의를 나타냈다.

[그림9] 혐오표현 대응정책 (국민인식조사)



3. 혐오표현 대응방안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정책들은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규제에서부터 교육·홍보 등과 같이 혐오표현이 발화·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혐오표현의 공론화와 인식개선,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실행, 자율규제 기반 조성 등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혐오표현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혐오표현 실태 조사나 현상 진단과 함께, 정책개발에 필요한 개념과 인식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혐오표현이 무엇이고, 그 형태는 어떠한지, 혐오표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인권위는 혐오표현 실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혐오표현의 개념과 문제점, 대응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작중이다.

대사회 캠페인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 혐오표현이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교정과 함께 혐오표현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의

대다수는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인권위도 혐오표현 예방 동영상 제작 등의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 혐오표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향후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둘째, 사회 핵심영역에서 혐오표현 대응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지방 정부나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종교계, 교육계, 언론, 정치인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혐오표현에 대한 공공기관의 태도는 사회일반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언론을 비롯해 각 주요영역에서 혐오표현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범사회적 정책선언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치인이 혐오표현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부정적 역할 평가가 긍정 역할의 15배 이상).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혐오표현의 해악성도 커진다. 역으로 이들이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 또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혐오표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정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셋째, 혐오표현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율규제란 공공기관이나 학교, 언론,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이 스스로 혐오표현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 구성원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1년에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2014년 개정)이나, 해외에서 트위터, 유튜브 등의 IT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에 <온라인상 불법적 혐오표현 대응 행동준칙>을 제정하였는데, 이 준칙에는 IT 기업들이 혐오표현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구축하고 관련기관들과 상호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이들 IT 기업들은 모니터링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혐오표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삭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행동준칙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참여자 대부분이 소속 기관에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⁵⁾ 사회 각 영역에서 자율규제 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각 영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5) 초중고 교사(60명)의 95.0%, 언론사 기자(44명)의 95.5%, 정부기관 공무원직원(54명)의 92.5%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 이유로 대체로, 혐오표현 판단의 기준 제시, 조직 내 인식 제고 등이 제시됨(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보고서, 93~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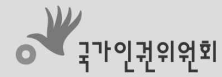
넷째, 앞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혐오표현 확산을 막고 대항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개발하는 한편,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혐오표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노르웨이 정부는 중앙정부 합동으로 <혐오표현 반대 정책 선언>을 발표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2015년에 <혐오표현 대응전략 2016-2020> 5개년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향후 인권위는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종합대책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다.

4. 나오며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시정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미 여러 나라들이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입법조치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최근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사회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입법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다각도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혐오표현 대응에 있어 차별금지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구조적 차별 강화, 민주주의 왜곡, 사회통합 저해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아직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혐오표현을 제어하는 장치들도 미흡하다. 혐오표현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혐오표현 자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전사회의 대응이 절실하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저마다의 빛깔로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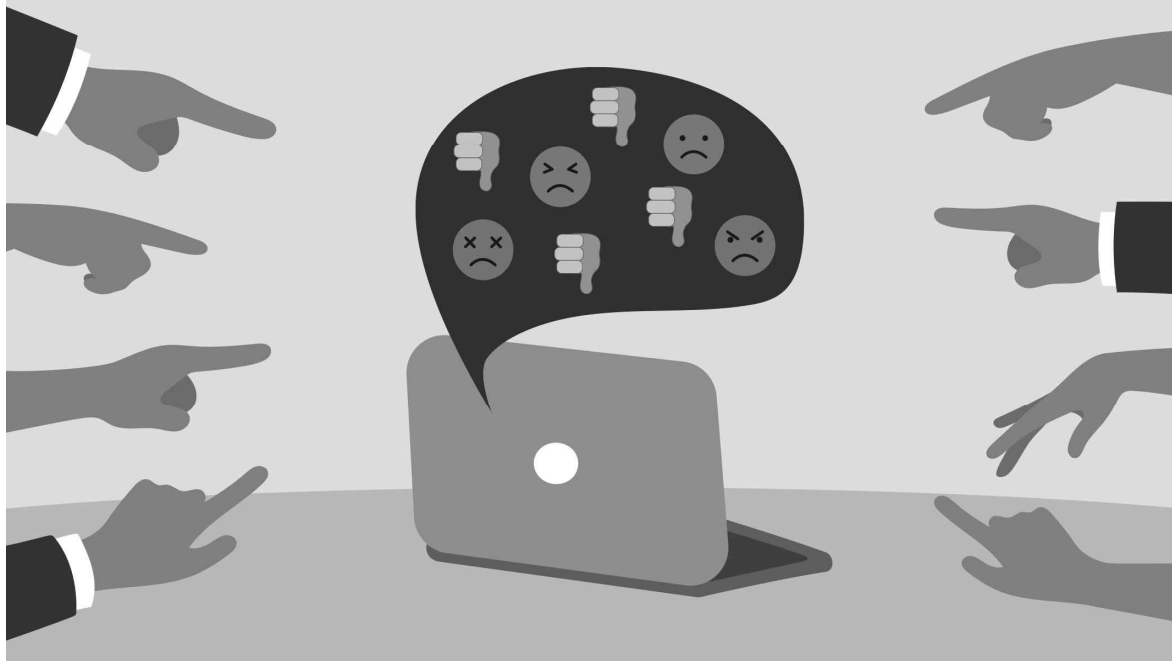
**조사
개요**

국민인식조사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3일간)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pm 2.8\%p$

청소년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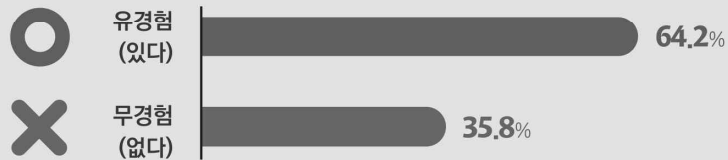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9일부터 14일까지(6일간)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pm 4.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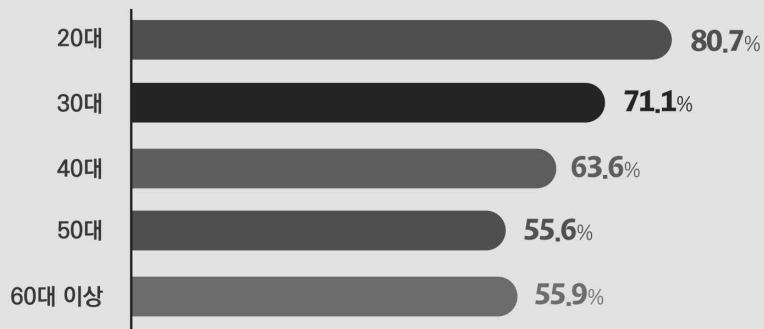
혐오표현 경험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이상인 64.2% 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표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혐오표현 경험 유무



● 연령별 혐오표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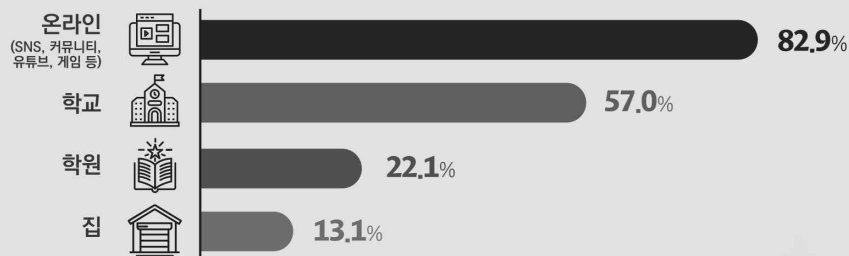


청소년의 혐오표현 경험 - 장소, 주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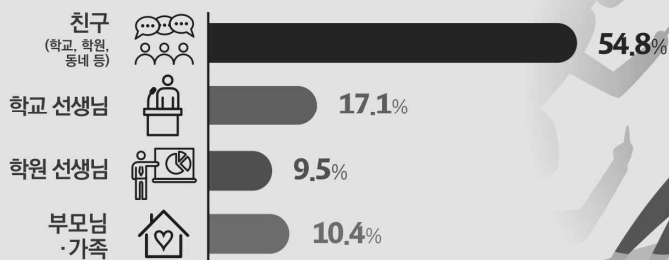
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의 82.9%가 SNS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57.0%)에서, 친구(54.8%)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혐오표현 사용자가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17.1%였습니다.

장소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주체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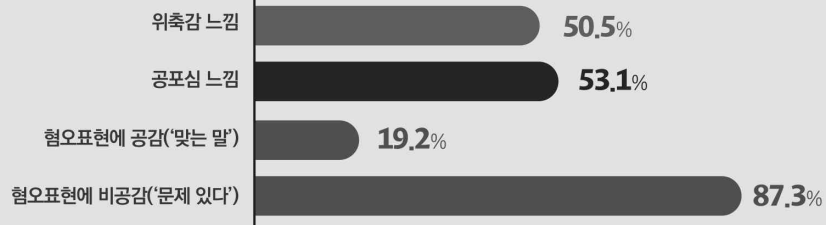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혐오표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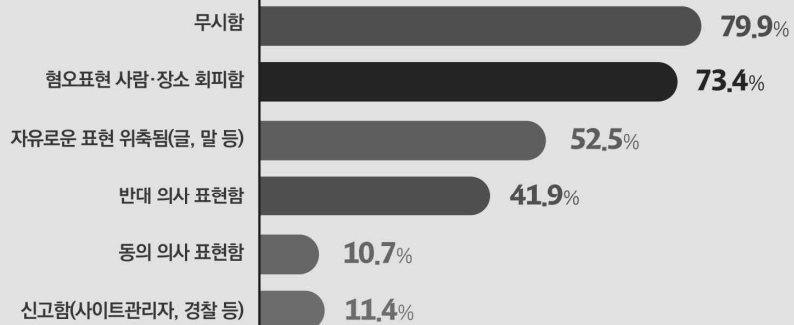
혐오표현을 접한 후 87.3%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공포심(53.1%)이나 위축감(50.5%)을 느낀 사람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반대 의사 표현(41.9%)보다는 그냥 무시하거나(79.9%), 혐오표현 발생장소나 사용자를 피하는(73.4%) 등 주로 소극적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혐오표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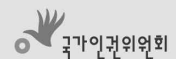
심리 · 인식



동행 · 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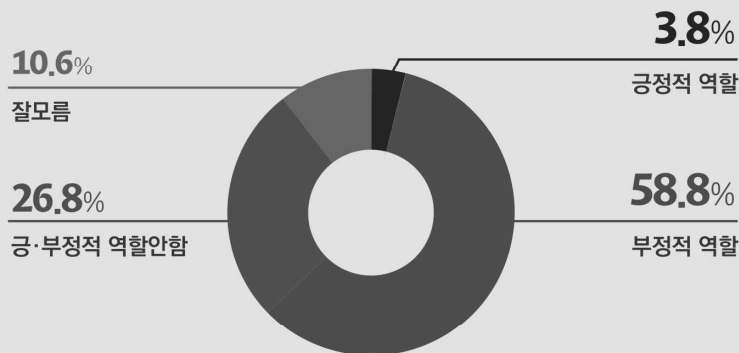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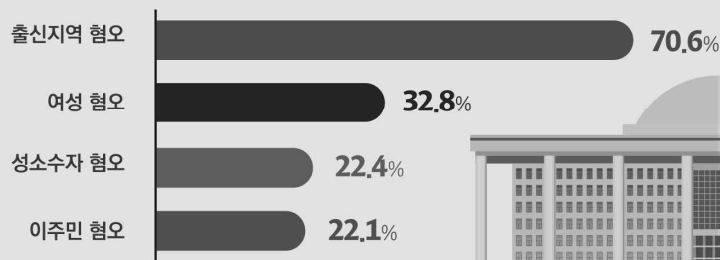
혐오표현과 정치인

국민 10명 중 6명(58.8%)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표현을 조장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인이 조장하는 혐오 유형으로는 특정지역 출신자에 대한 혐오(70.6%)가 가장 높고, 여성(32.8%), 성소수자(22.4%), 이주민(22.1%)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 혐오표현에 대한 정치인의 역할



● '정치인 조장' 심각한 혐오 유형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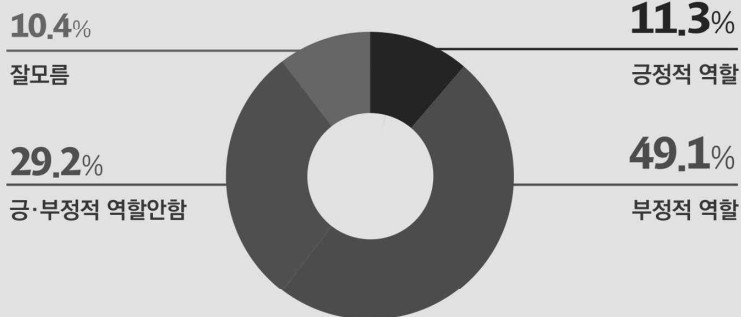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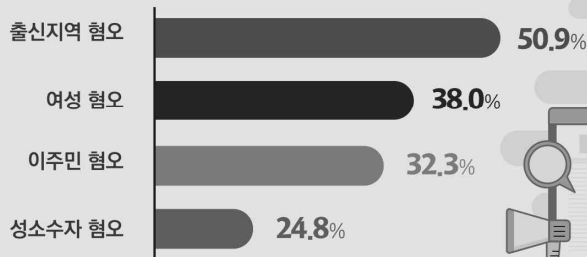
혐오표현과 언론

언론 역시 혐오표현을 조장하는 부정적 역할(49.1%)을 한다는 인식이 높고, 언론의 혐오표현 대상으로는 특정지역출신자(50.9%), 여성(38.0%), 이주민(32.3%), 성소수자(24.8%)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 역할



● '언론 조장' 심각한 혐오 유형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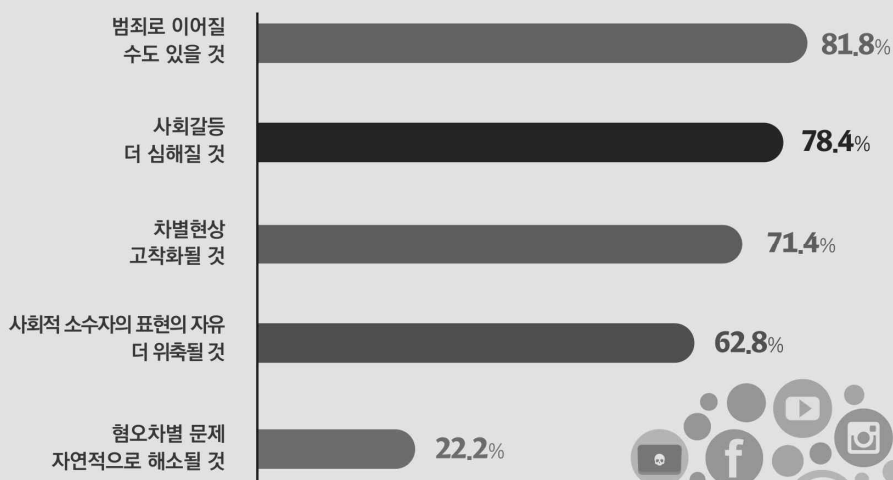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향후 전망

응답자들은 향후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81.8%),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것(78.4%), 차별현상이 고착화될 것(71.4%),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가 더 위축될 것(62.8%)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동의는 22.2%에 불과했습니다.

● 혐오표현 관련 전망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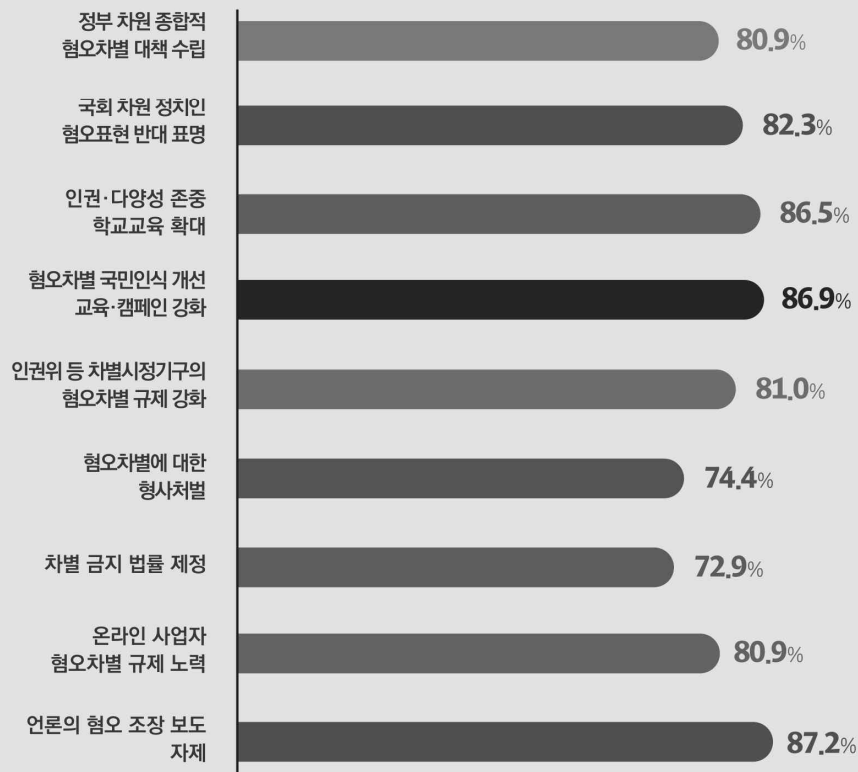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

혐오표현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정책들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혐오표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2부: 언론과 혐오표현

발표1 미디어와 혐오표현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발표2 혐오표현 규제와 방송통신심의

윤성옥(경기대학교 교수)

패 널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

김동훈(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한겨레신문 기자)

미디어와 혐오표현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1. 미디어와 혐오표현

1) 혐오표현이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201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중 하나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소수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표현, 차별·혐오를 의도·암시하는 표현, 소수자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표현,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등을 포함했다.

여러 혐오표현 관련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다음 행위’를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자·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다. 여기에 ‘다음 행위’란 “△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하여 모욕·비하·멸시하거나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을 차별과 폭력에 동참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혐오표현과 미디어의 상관관계

① 언론이 혐오표현을 어떤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

국가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전문에는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

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디어와 국민의 인권의식과의 연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증가가 한국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라는 분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주류 언론’이 혐오표현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거의 전적으로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국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뜨거운 담론장이 되어야 하며, 언론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콘텐츠를 내놓고 있는지 항상 성찰해야 한다.

② 유명인의 혐오표현을 전하는 기능을 가진 언론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

언론은 누군가가 혐오표현을 했을 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언론이 그저 화제의 말로 전하고 있는지,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며 양비론을 펴고 있는지,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를 접하는 시민의 인식은 많이 달라진다.

특히 혐오표현에서 발화자의 지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혐오표현을 한 사람이 사회 내에서 어떤 위치와 지위를 지녔는가에 따라 혐오표현의 해악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명한 사람, 정치인, 연예인 등의 혐오표현은 언론에 대부분 노출된다. 이때 어떤 문제점도 언급하지 않은 채 화제의 발언을 한 수준으로 처리될 경우,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라고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 행태를 보일 경우 언론은 혐오표현을 한 발화자와 똑같은 행위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아니 사실은 발화자의 혐오와 차별인식에 사실상 동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언론이 발화자의 혐오표현 도달범위와 위력만 더 키워준 것이다.

③ 언론 그 자체가 혐오표현을 담은 콘텐츠를 내놓은 경우는 더욱 심각

언론이 특정 발화자의 혐오표현을 전해주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서서 스스로 혐오표현이 담긴 콘텐츠를 양산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사 개그프로그램에서 소수자에 대한 비하나 혐오를 웃음의 소재로 삼는 경우는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범죄의 온상으로 그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대중의 인식에 그들에 대한 편견이 각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미디어 종사자들은 일개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소수자 일반의 특성으로 치환하여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일인미디어의 콘텐츠에서 빚어지는 혐오표현 문제는 더욱 심각

최근에는 기성 언론의 언론인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동영상과 커뮤니티 게시글 등에 등장하는 일인미디어의 콘텐츠에 담긴 혐오표현도 문제로 부상했다. 여기에 이들 글과 영상에 달린 댓글에서도 혐오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적극적으로 혐오표현을 양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종의 유행처럼 강한 어조로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 자신들이 하는 말이 혐오표현인지 아닌지, 최소한 인권침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 표현의 자유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노골적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은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이를 토대로 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2. 미디어 속 혐오표현 실태(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 보고서를 중심으로)

1) 혐오표현에 가까운 언론보도 사례

① 성 차별적 발언 사례

□ 2016년 6월 1일 낮 12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불꽃페미액션’의 20대 여성 약 10여명이 언론의 성차별적인 보도방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는 기자회견 여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여성들이 언론의 여성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방식을 비판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습관적으로 00녀라고 호칭하며 제목으로까지 부각하는 태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10월 용인의 아파트단지에서 50대 여성이 벽돌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을 ‘캣맘 사망 사건’이라고 보도하였다. 2016년 3월 2일, 서울 H의료재단의 50대 남성의사가 상습적으로 진료 중에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해온 것이 밝혀진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헤럴드경제는 ‘대장내시경녀’ 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직후 몇몇 언론사가 “노래방 살인녀”, “화장실녀”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1/20)에서 진행자인 이계진 전 의원은 “옛말에 간다 간다 하더니 애 셋 낳고 간다는데, (문재인) 애 셋 낳고 떠날 거다”, “박영선 의원도 애 셋 낳고 갈 것” 등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서 방통심의위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이계진 전 의원의 “결국 여성이 여성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동료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여성이 여성을 막는다”(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1/22), 운영걸 씨의 “박영선 의원이 오빠들이 많잖아요”(채널A <쾌도난마>(1/25)), 박은주 앵커의 “박지원 의원한테 구애하는 거 보면 (안철수 의원이)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돈 많은 사장님이나 과장님이란 결혼을 해야 하는 여자의 처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TV조선 <이슈 해결사 박대장>(1/28)), 신은숙 씨의 “최경환 의원이 유승민 의원을 바라보는 눈길이 내가 현재 본처거든. 과거에 어떤 사랑을 받았던 첩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처야”(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2/5)) 등 심각한 수준의 여성 비하 발언들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런 발언들에 대한 방심위의 기각 사유는 “출연자 개인의 견해”, “통상적인 수준”, “1회성 발언” 등이었다.

□ MBN <뉴스파이터>(2017/12/29)에 출연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조운선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맡아온 것에는 최순실 씨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론을 펼치는 중 “여성가족부 하던 여성을 정무수석으로 했다. 정무수석은요. 만날 국회에 가서 여당 의원, 야당 의원과 밥도 먹고 저녁에는 술자리도 하고 대신 전달하러 가야 하는데 사실 한국적인 이런 풍토에서 여성이 정무수석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대통령도 여성인데요 (후략)”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성별이나 인맥이 아닌 능력으로 인사해야 하는 위치라는 점에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서 사회자와 함께 토론하는 패널 누구도 반론을 펼치지 않았다.

□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2017/1/28)에 출연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김정숙 여사를 향해 “아무튼 적극적인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여자가 너무 나댄다. 아주 그 사투리로. 이렇게 해서 좀 비호감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김정숙 여사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사투리’라는 토를 달긴 했지만 ‘여자가 나댄다’는 명백한 여성비하 발언이었다. 하지만 진행자 이봉규 씨는 민영삼 씨의 발언에 한술 더 떠서 김 여사를 “왈가닥 혹은 치맛바람 내조”라 표현했다. 민영삼 씨는 이전 해에도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2016/9/17)에 출연해 역시 김 여사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민 씨는 “특히 정치권에서는 여자가 잘해 봤자 본전”이라며 “현모양처 쪽보다는 속된 말로 설친다, 나댄다(중략)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분이 문재인 전 후보의 부인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당시 이 방송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기각되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기각을 결정하며 “해당 내용은 ‘5대 영부인 후보들’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아내 김정숙 씨가 문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 기존의 주요 대통령 및 정치인 아내들의 모습과 차별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이며, 그 과정에서 언급된 일부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 진행자가 즉각적으로 수정한 점, 이후 문재인 전 대표와 김정숙 씨의 일화를 소개하며, 김정숙 씨가 문 전 대표의 모범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함께 언급되는 등 전반적인 발언 내용과 맥락 측면에서 특정인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

- TV조선 <이슈 해결사 박대장>(2016/1/14)은 여성 정치인을 향해 '안철수의 여자', '문재인의 여자' 등으로 표현하며 논평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1항과 2항을 위반했다면서 권고(행정지도)를 결정했다.

②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주는 보도 사례

2016년 6월, 학부형 3명이 교사를 성폭행한 전남 섬마을 성폭행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모든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에 몰두하면서 사실상 ‘공범’과도 같은 행태를 보였다. 이 중에서 방송을 통해 사실상 성폭력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사안이 있었다.

채널A <단독/“성폭행 의도” 계획 범행 시인>(6/7)은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지난달 21일 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술자리에 동석했던 A씨”를 만나 “생생한 증언”을 담았다고 내세운 단독보도이다. 박상규 앵커는 보도를 시작하면서 A씨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경찰은 계획적 성폭행임을 확인”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전하는 듯했으나 정작 리포트 내용은 A씨의 가해자 두둔 발언뿐이다. A씨의 발언은 “다 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기사 난 건 60~70% 과장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바래다주면서 선생님 잘 잠그고 주무시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열어주니까, 순간적으로 같이 술 먹다 우발적으로” 등의 내용이다.

더 황당한 것은 보도를 시작할 때는 앵커가 “생생한 증언”이라고 소개한 이 발언들을 리포트의 기자는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라 묘사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말을 덧붙인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로 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게다가 채널A는 A씨의 발언을 전하면서 화면에 재연 장면까지 삽입했다. 가해자 3명이 만취해 고개를 숙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는 모습과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들이다.

채널A <“꼬리 쳤다” 황당한 감싸기>(6/7)에도 김철웅 기자는 절대로 옮겨 답아서는 안 될 2차 가해 발언들을 모두 전했다. 김 기자가 전한 주민들의 “남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남자들이... (나이가) 80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도 없어”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디 있어. 어린 애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같이 있을 때는”라는 발언은 언론보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 옮기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내용들이다. 굳이 이런 인터뷰를 따로 1건을 떼어 보도하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시 방통심의위는 채널A의 보도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방심위는 채널A <단독 /“성폭행 의도” 계획 범행 시인>에서 계획 범행임이 확인됐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없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한 인터뷰는 범죄 보도 특성상 인터뷰 내용 등을 그대로 전달한 방송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연 장면에는 ‘사회통념상’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인터뷰 내용이 더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채널A <“꼬리 쳤다” 황당한 감싸기>에서도 ‘범죄 관련 보도의 특성 상 인터뷰 내용 등을 그대로 전달’했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③ 성차별적 인식과 함께 탈북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사례

- MBC <뉴스데스크> ‘집중취재/남남북녀’ 결혼이 대세? 사기주의보’(2016/05/22) 보도는 북한이탈 여성과 국내 남성들을 짝 지어주는 결혼정보업체가 성업 중이지만, 이들 영업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보도였다. 그러나 보도에서는 기사가 남한 여성에 비해서 북한 여성이 순종적이며 생활력이 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멘트 했으며, “국내 여성들은 오롯이 돈을 보고 붙는 여성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여성들은 사람을 먼저 봐요. 착하고 예쁜 분들이”라는 업체 관계자의 발언을 담았다. 이어 탈북여성의 ‘여성의 임무는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서 대접 잘하는 것, 그러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요’라는 발언도 보여줬다. 보도는 이렇게 광고를 해서 탈북여성과 결혼했지만 사기를 당했다며 국내 남성의 피해사례를 나열했다. 이 보도는 북한 여성이 현모양처 감이라는 등의 성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담은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탈북여성이 스스로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교하게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탈북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키울 가능성이 높았다.
- 동아일보의 <야방북녀... 낮선땅 쉬운 돈벌이 유혹>(6/23)는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젊은 탈북 여성 이 모씨가 생활비를 얻기 위해 성인방송에 출연했다가 적발된 사례’를 상세히 전했다. 보도는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범죄에 내몰리는 탈북자 문제를 의제화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정작 ‘탈북여성 대부분’이 야한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와 통계도 없다는 점에서 이 보도는 오히려 탈북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주입·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컸다. 조선일보 역시 인터넷 기사 <성관계 인터넷 중계한 여성 BJ 무더기 적발...탈북여성 BJ도>(6/21)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보도 했는데, 이 보도는 최소한 ‘여성 BJ 10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소속 BJ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기획사 대표 B(42)씨와 인터넷 방송업체 관계자 등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불구속 입건 된 10명의 BJ 중 탈북여성은 C(26·여)씨만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는 음란방송 BJ 10명 중 탈북여성이 있는 것에 착안해서 사안을 침소봉대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야방북녀’(야한 방송을 하는 탈북 여성)라는 자극적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성인방송 업계에 ‘진출’한 젊은 탈북 여성의 일부 사례를 부각한 것은 부주의한 행태였다.

북 여성)

北女… 낯선땅 쉬운 돈벌이 유혹

만남 자본주의

에 수십만 원을 벌었다. 쉽지 않았다. 고향에선 다. ‘웃 한 번만 빚으면 이젠 주(가명·26) 씨의 눈

인방송을 했다. 유명 BJ(Broadcasting Jockey) 방송진행자들의 방송을 보면서 이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민망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에 놀랐

다. 한 달가량 인터넷을 뒤져 방송법을 배웠다. 온라인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도 댓글 게시판을 살살이 살펴보고 배웠다. BJ들이 있는 소속사를 찾아가면 편하지만 수익의 절반 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 이 씨는 한 동영상 사이트에 개



△ 동아일보의 ‘야한 방송하는 탈북 여성’ 관련 보도와 삽화 갈무리 (6/23)

또한 동아일보는 ‘구조적 문제로 범죄에 내몰린’ 탈북 여성의 문제를 다룬다면에서도, 이들이 ‘범죄를 통해 쉽고 즐겁게 수입을 올렸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예컨대 “갈수록 수위는 높아졌다. 1만 원을 낸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 방송에서는 유사 성행위까지 했다. 수입은 기대 이상이였다. 이 씨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한 달에 300만 원을 보냈다. 그리고도 수중에 400만 원가량이 남았다. 고급 외제차와 명품 의류를 사들였다. 대한민국은 그에게 천국이였다”는 등의 가십성 서술을 붙여놓았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에는 소수자들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소수자의 인권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고찰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거나 선정적 흥미위주의 접근으로 몰아갈 때는 해당 소수자에 대한 혐오만 남길 우려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제 9장(북한 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에는 “사회 부적응 등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경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탈북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강화시킬 수 있는 구성이었다.

④ 성 차별적 인식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준 방송

KBS <아침마당>(2018/6/14)에 출연한 엄용수 씨는 자신의 과거사와 근황 등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다. 먼저 엄용수 씨는 출연료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추 축제하면 (출연료로) 고추를 받고, 딸기 축제를 하면 딸기로 받고 굴비 아가씨 축제하면 아가씨로 받고”라는 부적절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수준의, 농담이라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특히 공영방송 KBS가 온 가족이 시청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아침 시간에 이런 발언을 송출했다는 것은 방송 사고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엄용수 씨는 “내가 성희롱 했다는 기사 본 적이 있느냐. 뭘 수 없기 때문에 금세 붙잡힌다. 그런 행동을 아예 안 한다”고 발언했다. ‘장애가 있어서 성희롱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은 엄 씨 개인이 ‘결백함’을 강조하기 위해 꺼내놓은 과장된 수사였지만, 이 또한 불필요한 발언이다.

특히 엄용수 씨는 “대학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 엄지발가락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6급 장애인 등록을 받았으며 ‘항공료 30% 할인을 받아 가만히 앉아서 1년에 1000만 원을 번다’고 말했다. 이는 본인이 장애가 있음을 강조하는 발언이었겠지만, 6급 장애인이 되면 ‘항공료 30%를 할인받는 것’과 ‘가만히 앉아서 1천만 원을 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방송 이후 이 발언의 맥락과 문제점을 분명하게 알려주는커녕 엄 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부각하는 형태의 또 다른 문제보도가 나왔다. 특히 티브이데일리 <시선강탈/‘아침마당’ 엄용수 “굴비 아가씨 축제 가서 아가씨 달라고 해, 현찰 고집 NO”>(6/14)는 제목부터 매우 부적절했다. 또한 MBN의 온라인 기사 <코미디언 엄용수 “엄지발가락 잃어 6급 장애인, 가만히 앉아 천만 원 번다”>(6/14)도 제목만 보면, 6급 장애등급을 가진 이에게 국가가 천만 원의 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낳을 수 있는 부적절한 제목뽑기이다. 한 희극인이 방송에서 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한 농담조로 던졌다면, 차라리 보도를 하지 말던가, 보도를 한다면 제대로 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 없는’ 보도가 남발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성할 소지가 크며, 그 자체가 언론의 폭력이다. 실제로 다음날 전국장애인연합회는 <장애와 여성에 대한 모욕 비하 발언, 차별행위를 자행한 엄용수와 공영방송 KBS는 관련내용 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라는 성명서를 냈다.

⑤ 외국인, 이주노동자,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 사례

□ 고양 저유소 화재 당시 용의자 국적을 공개한 언론행태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저유소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다음날 오후 경찰은 저유소 화재 사건의 용의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났고, 이 불씨가 휘발유 탱크에서 새 나온 가스에 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9일, 검찰은 “풍등과 저유소 대형화재 사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A씨의 국적을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경찰이 용의자를 긴급 체포한 직후 연합뉴스는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긴급체포”>(1보), <풍등 날리다 고양 저유소 화재 유발 혐의 스리랑카인 체포>(3보) 등의 속보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영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을 때도 연합뉴스는 관련 보도에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영장 신청...“검찰, 수사 보강 지시”> 등의 제목을 붙였다. 방송사 중에서는 M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가 모두 8일부터 9일 사이 내용은 저녁종합 뉴스 관련 보도 제목에 ‘스리랑카인’이라는 정보를 담았다. MBC만 유일하게 구체적 국적 정보를 제목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도 8일과 9일 지면 관련 보도 제목에 ‘스리랑카인’이라는 정보를 담았다. 보도 내용에 국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매체는 없었다.

이 당시 언론인 대부분은 경찰이 제공한 정보이니 여과 없이 받아써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보도내용에서 용의자가 ‘스리랑카 노동자’임을 언급한 것은 거의 모든 언론이고, 제목으로 이를 뽑아 부각하지 않은 기사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언론인들은 경찰 브리핑을 듣고 무조건 받아쓰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경찰 발표라 하더라도 공익 보다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널리즘의 원칙에 따라 걸러내는 기본자세가 있어야 한다.

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분명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2014.11 개정) 이주민과 외국인노동자 인권 조항인 제5장 2조에서도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관련 실천요강에 범죄사건과 용의자 국적이거나 민족을 부각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외국에서는 더욱 강조하는데 예컨대, <독일언론협회 보도준칙>에서는 소수자 보호와 선입견 방지를 위해 범죄 용의자의 국적과 종교는 보도금지가 원칙이며, 공개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 백보 양보해 범죄사건에서 용의자의 국적 등 신변을 꼭 밝혀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행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을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신고나 제보를 토대로 은폐된 범행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추가 범행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범죄혐의자 신변 공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의도성이 규명되지 않은 실화 사건의 경우,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유포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없다. 그저 스리랑카뿐 아니라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에 부정적 선입견을 주고 혐오감정을 부추길 부작용만 남은 것이다.

□ 붉은 수돗물이 이슬람 난민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터넷언론 기사

2019년 6월 25일 인천과 서울 일부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며, 선부른 추측을 통해 시민의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붉은 수돗물’ 사태를 두고 “일부 이슬람 난민 중 일부 극단 주의자 소행일 가능성”을 주장한 기사가 등장했다.

문제의 보도는 시사뉴스 <문래동도 붉은 수돗물...“일부 이슬람 난민 소행일수도”>(6/21 6/26 삭제)이다. 이 기사는 따옴표 처리로 이슬람 난민 소행 가능성을 부각한 제목도 악의적지만, 기사 내용에서 제시한 근거도 한심한 수준이다. 시사뉴스는 “인천에 이어 서울 문래동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근래 국내에 급격히 유입 중인 ‘이슬람 난민’ 중 일부 ‘극단주의자’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정보당국 관계자는 ‘붉은 수돗물’ 사태 원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테러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1923년 일제강점기 일본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 참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일본 여자들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로 인해 재일(在日) 조선인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상수도를 오염시켰다’는 소문은 근거없이 함부로 내뱉을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 ‘누군가’에 사회적 소수자가 지목되었을 때, 그 소수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붉은 수돗물’이 ‘이슬람 난민 중 일부 극단주의자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 시사뉴스의 보도는 관동대지진 당시 헛소문과 큰 차이가 없는 ‘혐오 조장 보도’에 가깝다.

특히 시사뉴스는 6월 예멘 난민 중 한국에 적대적인 무장반군 후티 조직원들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도 덧붙였는데 이 ‘가능성’은 출처조차 밝히지 않았다. 시사뉴스가 밝히지 않은 출처는 아마도 같은 기자가 작성한 투데이코리아 기사 <단독/예멘 난민 중 ‘한 적대시’ 무장반군 포함됐나>(2018/6/28 오주한 기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예멘 난민 중 한국을 적대시하는 무장반군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근거는 “제주 예멘 난민 수백명 중 시아파 교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는 익명 제주도관계자의 전언뿐이었다. ‘시아파 교도’가 전부 예멘 무장반군이라고 단언할 수 없음을 감안하면 역시 부실한 근거다. 부실한 ‘이슬람 난민 수돗물 테러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다른 부실한 ‘난민 무장반군 가능성’ 보도를 가져온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유포하는 것은 다른 오보들보다 그 위험성이 더 크다. 무고한 소수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혐오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권 침해인 동시에, 엄청난 대립과 갈등, 혐오범죄를 불러올 수 있다. 지난해부터 난민 이슈는 우리 사회의 갈등 사안으로 자리 잡았으며 여기에는 부정확한 보도로 사실과 다른 ‘난민 공포’를 부추긴 언론의 책임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 ‘붉은 수돗물’에 ‘이슬람 난민 소행’을 운운한 보도까지 버젓이 등장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혐오 조장과 혐오 표현이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충격적인 ‘난민 보도’를 하면서도 기사에 정작 실제 ‘난민’의 목소리는 아예 배제됐다. 심층적인 취재도, 당사자의 입장도, 소수자 인권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혐오를 조장한 이 보도의 심각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전 국민의 인권의식을 훼손하는 흉기 수준의 혐오 조장 보도는 즉각 사라져야 마땅하다.

⑥ 성적소수자 관련한 편견이 담긴 사례

□ 로버트 할리의 마약관련 기사에서 등장한 동성애 아웃팅

2019년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다. 하일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사과했다. 그런데 4월 9일자 뉴시스 보도를 시작으로 느닷없이 하일 씨가 성소수자라며 동성애를 ‘부끄러운 일’로 모욕하는 기사가 확산됐다.

뉴시스 <몰몬교 신자가 마약까지, 로버트 할리 부끄러운 민낯>(4/9)는 기사 첫 머리부터 하일 씨의 성적 지향을 겨냥했습니다. “몰몬교 신자로 알려진 방송인 하일씨가 과거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당시 동성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몰몬교는 동성애를 부정하는 보수 성향의 종교로 불리운다. 하씨의 경우 몰몬교 신자로 해당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마약과 동성애를 동시에 하는 등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뉴시스가 오로지 하일 씨의 ‘동성 행각’을 유포하기 위해 이번 사건이 아닌 과거 사건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한 남성 마약사범이 “하 씨와 연인관계로 함께 마약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하일 씨도 수사를 받았으나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와 무혐의 처분됐다는 것이다.

범죄보도, 약물 및 마약 보도 등 모든 부정적인 사안에 그와 상관없는 소수자성을 부각하는 것 자체가 모두 해당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성이거나, 중국동포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주아동이거나, 성적소수자이거나, 탈북민이거나 그것은 그저 범죄일 뿐이다. 언론이 범죄 용의자가 장애인이었거나, 성적소수자였거나 이런 식으로 연관시켜 보도하는 것 자체가 해당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일 씨 관련 보도는 한마디로 몰상식한 보도였다. 마약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많이 비판받는 범죄행위이다. 그런 마약범죄 관련자를 언급하면서, 그가 성소수자였음을 보도하는 것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큰 잘못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하일 씨 본인에게도 부당한 일이며, 성소수자 모두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행태이다. 더욱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소수자 정체성을 제3자에게 알리는 아웃팅(outing)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편견과 혐오가 여전한 한국사회에서 아웃팅은 성소수자에게 매우 큰 고통을 준다.

□ 방송보도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감염 연결 짓는 행태

TV조선 저녁종합뉴스 <뉴스쇼 판>에서 보도한 <10대까지 파고든 동성애>(2016/4/29)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 담긴 보도였다. 최희준 앵커의 “오늘 뉴스쇼 판은 지금까지는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졌던 동성애가 우리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라는 오프닝멘트로 시작된다. 최희준 앵커의 이 발언은 성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모독이다.

뿐만 아니라 이 보도에서 최희준 앵커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10대와 20대의 감염자 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발언 중 삽입된 자막은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동성애’였다. 이 방송은 ‘10대 청소년의 동성애’가 ‘10대 20대의 에이즈 감염자 수 증가’의 원인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정보를 내보낸 것도 모자라 이어지는 보도 또한 낮은 인권의식을 드러냈다. 보도 영상은 남성 동성애자 전용클럽, 모자이크 처리가 된 여장남자, 손잡고 있는 동성, 동성애 소재의 웹툰 등을 비쳤다. 이 보도의 주제는 ‘에이즈’였으나 초반 2분 6초 동안 ‘에이즈’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동성애에 대한 박상현 기자 혹은 제작진들의 비판적 시선과 낮은 인권의식만 확인될 뿐이다.

⑦ 유명인의 혐오표현에 대해 감싸는 보도태도

□ 2019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의원 발언

2019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세월호처럼 죽음의 고향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세월호처럼 죽음의 관광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는 출정식 이후에도 발언의 진의를 묻는 기자들에게 “세월호 유족들도 (광화문 광장에) 저렇게 계시면 건강에 안 좋다”,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상태로 추모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해당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사과는커녕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년도 넘게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쳐놓고 있는 게 맞느냐,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자신의 발언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5월 30일에도 김문수 후보는 KBS 주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성애 퀴어축제처럼 동성애 인증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 “동성애가 인정되면 에이즈와 출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했다. 김 후보는 “도시도 항상 다듬고 옆고 옆집과 비교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답시고, “아름다운 여성이 전혀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는 것은 아니지 않냐. 매일 씻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는다”는 황당한 성차별적 비유를 했다. 발언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김문수 후보의 문제 발언을 외면했다. 세 발언을 모두 전달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세월호 발언으로 한정할 경우 저녁종합뉴스에서 이 발언을 전한 것은 MBC뿐이었다. KBS와 SBS는 온라인 기사만을 내놓았으며, JTBC, TV조선, MBN은 온라인 기사도 내놓지 않았다. MBC <‘경부선’ 훑으며 “정권 견제”>(5/31)는 “출정식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던 김 후보는 느닷없이 세월호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라는 멘트로 상황을 설명했으며, <뉴스서비스 이슈 푼!>(6/2)은 김문수 후보 발언을 전한 뒤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논란’ ‘비난’ 등의 표현을 통해 문제점을 부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MBC를 제외한 방송사 중 저녁종합뉴스가 아닌 다른 방송에 송출되는 보도로라도 이 사안을 전달한 곳은 채널A 뿐이었다. 그러나 채널A는 차라리 보도하지 않는 편이 더 좋았겠다 싶은 수준의 보도였다. <뉴스A LIVE>에서 방송한 <유세 첫날 승부처 공략>(6/1)은 해당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함께 기자와 진행자는 ‘사실은 혐오 발언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라는 시민들 지적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적할 수는 있을지언정’ 등의 발언을 덧붙였다. 김 후보의 세월호 폄훼 발언을 감싸려 한 것으로도 보이는 부분이다.

이처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드러내는 발언이 도를 넘어 서면서 ‘혐오 표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언론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내용은 후보의 인권 의식 수준을 가늠케 하는 주요한 정보이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뿐 아니라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도 “동성연애를 인권으로 포장해 조장하는 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박성호 경남교육감 후보는 “동성애, 교사 부모 고발권리 주는 학생인권조례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2019년 5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들은 혐오 표현과 혐오 선동을 중단하고 선관위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은 이런 후보자들의 발언을 제대로 전하되, 따옴표로 무책임하게 발언 내용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는 방식으로 보도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발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19년 7월 19일 부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고요”, “(외국인을)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주민 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대부분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TV조선은 황교안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리포트를 냈다. 앵커와 기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앵커가 “황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라고 묻고 기자가 황 대표 발언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덧붙이는 식이었다. TV조선 <따져보니/외국인 노동자 임금체계 어떻게?>(6/19 강동원 기자)는 일종의 TV조선 판 팩트체크 코너이다. 따라서 이 보도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주요 주장들을 ‘팩트체크’해야 했는데, TV조선은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이유를 따져보겠”다며 보도를 시작했다. ‘팩트체크’의 대상이 황 대표의 주장이 아니라, ‘황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이유’라는 것이었다. TV조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외국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줄이자’는 취지를 거론했는데 이는 사실상 ‘외국인이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황 대표 주장의 동어반복이었다. 황 대표 발언도 결국 외국인의 임금을 줄이자는 요구, 즉 ‘최저임금 외국인 차등 지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TV조선이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덧붙인 근거들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에 ‘외국인은 기여한 바 없고 세금 안 낸다’는 주장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의미를 부여하고자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TV조선과 달리 JTBC, YTN은 물론, 경제지인 이데일리와 아시아경제에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팩트체크’했다.

2) 혐오표현 수준의 방송사 개그 프로그램의 소수자 비하 사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는 ‘2008년 올해의 나쁜 프로그램’으로 KBS <개그콘서트>의 ‘독한 놈들’, 봉숭아학당의 ‘여성학자’, ‘나일출’코너를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코너가 지나친 여성비하 및 외모비하 발언으로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그콘서트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 프로그램의 여성비하와 막말, 외모 비하, 가학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 개그맨이 그해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모 단체에서 2008 나쁜프로그램으로 <개그콘서트>를 선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개그맨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걸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이런 선택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하면서 2009년 1월에는 개그프로그램에 비판 논쟁이 벌어졌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웃음을 책임져온 개그 프로그램들이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대상이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집단이 아니라, 주로 불특정 다수의 사회적 소수자라는 점에서 풍자의 영역이 아니라 비하가 아니냐는 지적이 터져나온 것이다. 한편에서는 우리 코미디가 장애나 외모, 특정 계층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오래된 일이지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가 없다거나 ‘개그는 개그일 뿐’이라는 반론이 펼쳐졌다.

그러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성, 장애, 민족 등의 차이를 선부르게 웃음의 코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다. 이들 콘텐츠의 문제를 두고 ‘혐오표현’이라는 딱지를 붙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래의 내용은 혐오표현의 전조증상으로 충분하며, 최소한 당사자들의 강한 항의와 함께 웃으면서 볼 수 없다는 시청자들의 불편함 호소가 이어졌던 내용이다.

① 성 차별적 개그, 자칫 여성 혐오 조장할 우려 있어

- KBS <개그콘서트>(2012~2013) ‘정여사’ 코너는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를 풍자하는 내용이었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쇼핑센터 직원의 고충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었으나, 왜 블랙컨슈머를 여성으로 그려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특히 당시 개념 없는 운전자를 ‘김여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유행이었기에, 블랙컨슈머를 굳이 남자 개그맨이 여장을 하고 나와 ‘정여사’라고 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 KBS <개그콘서트>(2015/1/11) ‘사둥이는 아빠딸’ 코너에서 아빠가 딸에게 새해 목표를 묻자, 딸이 “난 꼭 김치 먹는 데 성공해서” “김치녀가 될 거야. 오빠 나 명품백 사줘. 신상으로. 아님 신상 구두?”라고 답했다. ‘김치녀’라는 표현은 혐오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표현임에도 공영방송 개그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혐오표현식 뉘앙스를 담은 개그를 마련한 것이다.
- KBS <개그콘서트>(2017/1/22)에서 남편이 아내와 통화하는 내용은 “뱃속의 아이가 추워서 패딩을 하나 사야겠다고요? 200만원이요? 아, 그 패딩을 입으면 영하 20도에도 애기가 따뜻해 할 것 같다고요? 제가 확신이 안서서 그러는데 뱃속의 아이랑 히말라야가요? 아이고 욱하지 마세요. 제가 사드릴게요”라는 말했다. 심지어 이 코너에서 아내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쉽게 말해 ‘남편들의 뒷담화’로 구성된 ‘왜곡된 이 시대의 아내상’을 그린 코너라 할 수 있다.
- KBS <개그콘서트>(2017) <신랑입장>이라는 코너는 기혼 남성들이 술집에서 모여 서로의 애환을 나누는 형식이다. 이 코너에서 기혼 여성은 남편에게 육아의 책임을 ‘독박’ 짚우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기혼 남성은 돈도 벌고 애도 보느라 매우 애달픈 존재로 그려진다. 심지어 아내는 사치가 심하고 까다로운 존재로도 묘사되었다.
- tvN <코미디 빅리그>(2015/1/12) ‘10년째 연애 중’은 10년째 연애 중인 커플의 모습을 그렸다. 예쁘고 날씬한 10년 전 여자친구와 뚱뚱해진 10년 후 여자친구가 교차되어 나오는 이 코너는 재미를 위해 시종일관 두 여성의 외모와 성격 차이를 부각했다.

외모를 기준으로 ‘우등’과 ‘열등’이라는 구도가 설정되고, 10년 후 여자친구는 지나치게 과장된 몸짓, 거칠고 투박한 말투, 식습관 모두가 ‘열등’한 것으로 묘사된다. 극 중 ‘남자친구’는 음식을 좋아하는 ‘10년 후 여자친구’에게 “콩푸 팬더냐?”, “돼지냐?”라고 말했다.

- tvN <코미디 빅리그>(2015/2/22)의 ‘오춘기’ 코너는 “남자의 아직 끝나지 않은 사춘기”를 소재로 했다. 친구의 집에 놀러 온 남학생 친구의 누나를 성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면서 벌어지는 상황극인데, 모든 장면이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관찰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혹은 여성의 가슴 크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령 짧은 바지를 입고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찾고 있는 누나의 엉덩이를 남동생 친구가 노골적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관찰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실생활에서 벌어졌을 경우, 사실상 성추행, 성희롱적인 문제라고 생각될만한 해프닝들이 꾸준하게 웃음의 소재로 등장한다.
- tvN <코미디빅리그>(2018/3/4) ‘오지라퍼’ 코너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한 대만 때려줘요”라고 말하자, 남성이 주먹으로 여성의 배를 때리고, 이를 본 경찰이 “당신을 구타유발자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했다.

② 장애인에 대한 조롱도 문제

- KBS <개그콘서트>(2008/8/24) <버전뉴스>코너는 독특한 버릇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웃음을 주고자 했다. 출연자들은 뉴스를 진행하면서 각자 말 중간에 "야야야야야"라는 소리를 내거나, 턱을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하품을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 대사 중에는 "버릇이 있으면 고치든가, 참으면 되잖아 참으면"이라고 호통치는 내용도 있었다. 제작진은 “재미있는 버릇을 소재로 삼았는데 버릇과 '턱'의 경계가 모호해 확대해석 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결코 턱 장애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재발방지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③ 외국인 또는 이주민을 웃음의 소재로 삼으며 편견 부추겨

-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2014/1/10) ‘초사랑’ 코너는 당시 KBS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화제의 중심이 된 추성훈 가족을 개그 소재로 삼았다. 그러나 추성훈의 부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놀리고, 그의 아내 야노시호의 과장된 몸짓을 흉내내는 등 추성훈 가족을 조롱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 KBS <개그콘서트>(2013~2014) ‘황해’ 코너는 조선족을 비하한다는 논란이 많았다. 이 방송은 중국동포의 보이스포싱을 풍자했다. 개그에서 중국동포는 보이스포싱사들이 알려진 매뉴얼대로 전화를 하지만, 말투 등으로 인해서 번번히 실패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

웃음을 유발했다. 그러나 이 방송은 중국동포의 말투를 놀리는 것이며, 조선동포 모두가 보이스포싱 사기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④ 한부모 가정에 대한 비하표현

- tvN <코미디 빅리그>(2016/4/6) ‘충청도의 힘’ 코너에서 이혼 가정의 자녀는 생일 때 양쪽에서 선물을 받는다며 ‘이게 재테크’라고 하는 말하며 웃었다. 방송 이후 ‘차별없는가정을위한시민연합’이 tvN과 장동민에게 법적 대응을 선언할 정도로 논란이 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주었다.

⑤ 중국동포에 대한 편견 부각

- TV조선 <신동방통>(3/19)은 ‘주식사기 이희진 부모 피살사건’을 다루면서 용의자가 ‘중국동포 3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화 <신세계>에 비유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흔하다. 특히 조선족은 범죄에 끌어들이기 좀 적합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채널A <돌직구쇼>(3/14)에서는 아예 중국 동포가 등장하지도 않는 한국인 부부의 살인 사건을 전하면서 느닷없이 ‘조선족도 아니고 평범한 부부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나’라고 말했다. 모두 중국 동포를 흉악범죄자로 동일시한 혐오 발언들이다. 중국 동포 범죄가 실제로는 그리 많지도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매우 반인권적인 보도들이다.

3) 유튜브 게시물의 혐오표현

민언련은 2019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성 평등’과 ‘이주민, 외국인노동자, 난민’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과 관련된 유튜브 게시물을 모니터하고 있다. 그 결과 유튜브 게시물에는 여러 가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혐오표현이 등장하고 있었다. 유튜브 속 게시물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기성 언론에서 다루진 수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하지 않고 대체로 어떤 유형으로 관련내용이 전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민언련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인 만큼 현재까지 우선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주제부터 살펴봤다. 그 결과 △여경 혐오론을 담은 유튜브 게시물 모니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물 △이주민 차별 발언이 담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유튜브 게시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인종차별성 발언과 관련된 유튜브 게시물 △국내남성과 해외 여성을 소개해주는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올린 유튜브 게시물 속 인권침해 상황 모니터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을 둘러싼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혐오표현과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에 대한 지나친 공격

2001년 출범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펼치며 성차별 사회에 균열을 내왔다. 그러나 여가부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비난을 받아왔고, 그 비난의 근거는 대부분 허위조작정보, 다시 말해서 유언비어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조리퐁 괴담’이다. 2006년 12월 인터넷 등에서 “여성가족부가 과자 조리퐁이 여성의 성기와 닮았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를 추진했다”는 정보가 급속도로 번졌다. 당시 다음 포털에는 ‘여성부 폐지 1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었고, ‘조리퐁 괴담’을 사실로 믿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리퐁 괴담’은 명백한 허위정보였다. 당시 여성부 홍보팀장은 “조리퐁과 소나타 3 등과 관련한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여성가족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누리꾼 가운데 일부가 사실을 왜곡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이 유언비어로 인해 청소년마저 여가부를 얼토당토않은 일을 하는 곳이라 인식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여가부를 비난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허위정보가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실로 믿고 열성적으로 유포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SNS 등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주요 공간이 됐다. 민연련이 2019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 유튜브 게시물 중에서 ‘여가부’ ‘여성가족부’ 키워드로 검색된 영상 중 허위정보가 담긴 조회수 1,000건 이상의 영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여가부가 위마드의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위마드가 폐쇄되지 않는다는 허위조작정보 △여가부 진선미 장관은 메갈리아와 위마드에서 후원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허위조작정보, △여성가족부가 아이돌 외모를 규제한다는 단편적인 지적, △여가부가 카카오톡까지 검열한다는 과장, △여가부가 여성주차장과 여성도서관을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이 있었으며, △여가부가 동요 ‘아빠 힘내세요’를 유해가요로 지정하려 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다. 이와 같은 일부 유튜버들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목적은 ‘여가부 폐지’로 보인다. A 유튜버는 “여가부가 위마드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주장한 영상의 제목은 “아버지 여인 페미여성 근황! 여가부 만행 폐쇄해야 하는 이유”였다. 또 C 유튜버도 여가부가 위마드와 관련되어 있다는 영상에서 “이게 진선미가 메갈이고 위마듭니다(중략) 가는 길이 똑같아요. 오히려 행동하는 위마드라니까? 더 무서운거야. 그래서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하는거예요”라고 말했다. 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오해하게 만든 유튜버 영상의 마지막 멘트는 “오늘의 결론은, 남성가족부를 만들지 말고 그냥 여성가족부를 없애자”였다. 이처럼 여가부는 잘못하지 않아도 비난당하며, 끊임없이 폐지 압력을 받는다. 다른 정부부처의 경우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고 해서 폐지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허위정보까지 동원된 ‘여가부 폐지론’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를 없애겠다는 폭력에 가깝다고 하겠다.

□ 여경 혐오론

민언련이 유튜브에서 ‘여경’, ‘여성경찰’을 입력한 결과 노출된 게시물 중에서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업로드 된 게시물 중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을 추렸다. 그랬더니 조회수 상위 18개 영상의 종합 조회수는 무려 1,185만 회나 되었다. ‘여경’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게시물은 대체로 일부 여경의 행동을 전체 여경의 문제로 일반화하면서 ‘여경은 미숙하고 신체적으로 약해 쓸모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민언련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여경 무용론’ 관련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봤다. 그 결과 우선 ‘부산경찰 오토케 사건’이라 불리는 2018년 9월 <지금 난리 난 부산 여경 논란>이라는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부각되었다.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여경 4명이 출동했는데, 구경 중이던 시민이 구조작업을 대신 했고 여성경찰 4명은 “어떡해 어떡해”하며 당황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1장과 그 사진을 올린 네티즌의 글뿐이었다. 그러나 이 단 1장의 사진은 여성경찰 전체를 싸잡아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자막에서 “여경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고 표현했고, “이대로 가면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지 진짜여혐범죄가 생길 거고 도움은 여경한테 받아야하니 알아서해~” “여경 10명이 출동해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듯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228만 회를 기록했고, 댓글은 1만 6천여 개가 달렸다. 시청된 횟수가 조선일보의 하루 발행 부수 보다 많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과 달리 (여경들이) 적극적으로 사고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부터 시민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었고, 사고차량 위로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시민에게 사고자를 구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출동한 경찰들은 구조하기 쉽도록 사고차량 문을 잡고 있거나 추가 사고 예방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단편적인 장면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지만, 경찰의 입장은 사실상 ‘팩트’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변명이거나 거짓으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올해 5월 13일 발생한 대림동 여경 사안도 비슷한 여경 혐오론으로 부각되었다. 대림동 주취자 제압하면서 시민에게 도움 요청했다고 비난받아 지난 5월 13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서 취객들이 경찰관 두 명에게 체포되는 상황을 담은 15초짜리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으로 번졌다. 해당 영상이 중국동포 커뮤니티에 맨 처음 올라오면서 ‘대림동’이란 지역명이, 해당 영상 속 경찰관 중 한 명인 여성 경찰관이 취객에 밀리는 모습이 등장해 ‘여경’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 영상은 15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일부에서 화제가 됐는데, 여경이 취객에 밀린 장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장면을 두고 ‘여경은 뭐했냐’는 ‘여경 무용론’이 불거진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유튜브에서 ‘대림동 여경’ 키워드로 검색된 영상

을 하나씩 살펴보니, 여경을 혐오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50건의 조회 수의 합계가 총 270만회를 넘겼다. 여성경찰의 대응 영상을 본 유튜버들은 ‘여경 무용론’을 빠르게 퍼뜨렸다. F 유튜버는 “그런데 저 술 취한 50대 남자에게도 밀려서 다른 경찰들에게 도움의 무전을 쳐. 이렇게 치안에 도움을 주는 사람. 치안조무사지(조회수 26만)”라고 했다. F 유튜버는 또 다른 영상에서 “우리는 그 무능력함을 싫어한다고. 몸도 못 가누게 술 취한 노인 하나 제압 못하고 수갑도 주변 시민에게 부탁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을 하겠냐(조회수 3만)”고 힐난했다. G 유튜버는 “대책 없이 많이 뽑은 여경이 실상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답답합니다(조회수 1만)”고 말했다. 댓글창에는 “무슨 x발 경찰이 초등학교 직업놀이인줄 아세요?” “여경 늘려야 된다는 분들 꼭 위험한 상황에서 여경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와 같은 의견이 수천 개씩 달렸다.

대립동 여경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초로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에는 여성경찰이 주취자에게 밀쳐지는 장면에서 끊겼지만, 전체 영상을 보면 여경은 주취자를 무릎으로 누르면서 제압했고, 시민에게 원조를 요청한 뒤 추가로 지원 온 교통경찰이 수갑을 채워 범인을 체포했다. 결과적으로 시민도 경찰관도 아무도 다치지 않게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었다. 구로경찰서는 “실제로는 여성 경찰관이 즉시 피의자에 대해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이어갔으며, 남성 경찰관은 (다른) 피의자를 체포하였고 추가로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것(영상)만을 따로 놓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자격 유무를 말한다든지, 여성 경찰관 전체로 (무용론을)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미흡한 대응은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의 대처능력이 미흡하다면 이는 언론이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 경찰이 미흡하게 대응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의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여성 경찰의 경우에는 여경무용론으로 확산되는 것은 문제이다.

□ 이언주·황교안 등 정치인의 이주노동자 혐오

민언련은 이주민 관련 유튜브 영상을 모니터하던 중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이주노동자를 향한 혐오발언을 반복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언주TV’라는 유튜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생산성이 낮다”거나 “대한민국만 지금 글로벌 호구가 돼가지고 외국인 좋은 일만 자꾸 시키고 있다”는 발언을 해왔다. 정치인의 발언은 일반인의 발언에 비해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지독한 혐오 표현’보다 유력 정치인의 ‘점잖은 차별 조장 발언’이 사회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민언련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17일까지 <이언주TV>에 올라온 영상 181개를 점검했다. 이어 유튜브에서 ‘이언주’ 키워드로 검색해 나온 영상 중 이 의원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손님으로 출연하거나 시위기자회견 영상을 담은 46개의 영상(10개 채널)을 모니터했다. 그 결과는 심각했다.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 송금의 급증!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허위정보 유포하고 수차례 혐오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영상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이주노동자) 한국에서 그나마요 10년 넘게 일을 하면 연금을 다 타간대요. 이거 외국인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또 의문이 하나있고”라고 말했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굉장히 또 생산성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산성이 더 낮지 않다는 게 좀 이상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국내에서 살면서 철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세상 물정을 배워온 한국 사람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이제 몸만 어른이다 뿐이지 (중략) 한국 사람과 비슷한 인식과 수준이 되기까지 한 3년이 걸린다는 거죠”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동료 정치인에게 듣는다! 1편. 조경태 의원편> 제목의 영상에서 조경태 의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저 난민이라든가 과도하게 이 속에 어떤 소수 세력에 대한 우대정책, 이런 걸 과도하게 해서 다수를 지금 역차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 난민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연설하는 장면을 담은 <불법체류자 추방 이언주 의원 연설> 영상에선 “세금을 한번도 내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국민 합의를 거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는 6월 1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유튜브에서 더 확산됐다. A 유튜버는 황교안 발언을 “역대가장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라며 “자국민들을 위한 자국민 우선주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또 도입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분명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 유튜버는 “(황교안 대표 발언이) 그게 우과의 정상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황 대표가 한 ‘이주노동자에게 숙박비를 더 줘야 한다’는 ‘가짜뉴스’는 보수 유튜버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C 유튜버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이면 오히려 외국인을 고용할 때 간접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요”라고 했고, 파워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는 “최저임금 올렸으면 부대비용으로 숙박비 이런거 문 정부가 지원해 줄 겁니까? 그것도 지원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임금+숙식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똑같이 최저임금을 주게 되면 주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두 배로 돈이 나간다는 거죠. 죽어나간다는 겁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 속 이주여성 인권침해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국제결혼 홍보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는 이주여성 인권침해가 만연해 있었다. 여성을 상품처럼 전시해놓고, 결혼이주여성을 물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민언련은 국제결혼업체의 정상품화 광고의 실태를 알기위해 국제결혼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점검했다. 모니터 대상은 유튜브에서 ‘국제결혼’ ‘동남아 여성’ ‘이주여성’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은 국제결혼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25개이다. 이곳에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7개월 간 올라온 4,515개의 영상 중 518개의 영상을 임의 추출해 모니터했다.

그 실태는 심각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하는 A 유튜브 채널은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인터뷰 영상을 나열해서 올려놓았다. 여성의 얼굴과 간단한 프로필이 공개된 영상 화면이 526개가 올라와있었다(2019년 1월 1일부터 7월 10까지) 마치 여성을 상품처럼 전시해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결혼업체는 이렇게 여성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국제결혼을 홍보하고 있었다.

영상 내용도 심각했다. 영상 대부분은 중개업자가 국제결혼 여성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인데, 나이와 키, 몸무게, 학력을 묻는 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 결혼여부, 성경험 여부까지 물었다. 또, 사람을 폄하하기도 했다. B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중개업자가 국제결혼을 하려는 여성에게 “아가씨가 조금 나이는 있는데 이쁘네요. 94년생? 피부도 괜찮고 화장도 괜찮아요”라거나 “91년생이면 나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결혼이 늦었어요?” 이렇게 묻기도 했다.

또 국제결혼을 하면 “내가 고를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도 자주 보였다. C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서 국제결혼을 이미 한 남성이 국제결혼의 장점에 대해 “한국에서는 내가 고를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고를 수 있잖아요. 자신의 스타일을”이라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이 수십명 심지어 백명의 여성과 만났다는 내용도 나왔다. D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서 중개업자가 남성에게 “오늘도 한 스무 명 넘게 봤죠? 아침에 5명, 나갈 때 6명, 이쪽에 갈 때 15명. 지금 백명 짜 봤어요. 만족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개업자가 국제결혼을 하려는 여성을 앞에 앉혀 두고 “성격도 온순하고 착한 것 같다”며 “굉장히 좀 다소곳하고, 인상도 상당히 괜찮고 성격도 좀 붙임성도 좀 있을 거 같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뭐 혹시라도 좀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와서 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이주여성이 순종적일 것이라는 왜곡된 환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물

지난 7월 영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언론 보도는 당연히 폭력은 안된다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 SNS를 통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를 퍼나르며 무분별한 2차가해가 쏟아졌다. 유튜브는 루머가 퍼지는 확산기 역할을 했다. A 유튜버는 “둘다 똑같이 남자도 강패새끼고 여자도 사기꾼이야”라고 말했고 B 유튜버는 “이 여자의 행동이 딱 봐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중략) 이런 가정과탄범 쓰레기는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냥 베트남으로 꺼지세요”라고 말했다. 또 C 유튜버는 “막말로 유부남 꼬셔서 다른 여자 인생 박살내서 밟고 올라선 이 여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한국 국민으로 살게 된다는 게 저는 참 기분이 더럽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D 유튜버는 “오히려 동남아 이주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타겟으로 벌이고 있는 그들만의 알팍하고 비열한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고요. 다시 말해 해당 남성은 폭행 가해자이기 전에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거죠”라고 하기도 했다. 대부분 일방의 주장만을 사실처럼 받아들여 ‘이주여성 폭행’과 관련 없는 악성루머를 유포하고 있었다.

□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여성혐오 및 젠더 이슈를 둘러싼 왜곡과 오해

이외에도 민연련은 △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을 둘러싼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혐오표현 △ “생리통은 없다”거나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금요일에만 쓴다”는 식의 주장에 기반한 여성의 생리휴가에 대한 왜곡정보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면서 모든 남성이 성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가짜 공포 △ 여성전용시설을 둘러싼 오해 △ 고위임원직 할당제를 둘러싼 오해를 점검하고 있다.

3. 미디어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

1) 혐오표현에 대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필요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과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선 언론이 혐오를 혐오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혐오기사가 쏟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혐오표현 예방·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2018)' 결과 기자의 93.2%가 혐오표현 판단 기준이나 처리 절차 관련 규정이 없다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기존 <인권보도준칙>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보다 정교하게 개정 보완되어야 할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혐오표현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달라는 요청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혐오표현의 경우 전자는 간단하게 언급하되, 후자의 주의사항을 보다 맥락적으로 잘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를 더욱 풍부하게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2) 플랫폼 스스로 혐오표현 관련 대응지침 마련하고 관리할 필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등이 혐오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국민이 촉구할 필요도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기인한 혐오표현이든, 사실에 근거를 둔 혐오표현이든, 이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언론 규제는 언론탄압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움츠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업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혐오표현성 보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여 언론사들이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혐오표현 규제와 방송통신심의

윤성옥(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1. 시작하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리킨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 냥 빚이나 되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말은 무시무시한 대상임에 틀림이 없다. 가는 말에 따라 오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 역시 말의 진행과정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말이 어떻게 오가느냐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문제는 표현이 단순히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의 결과가 개인이나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전제에 있다.

사회마다 혐오표현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모든 나라에서 혐오표현의 규제가 다른 모양과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익숙한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단일민족 아래 집단과 통일을 중시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라는 울타리는 내부적인 단합을 공고히 했고 국민의 합치된 힘이 곧잘 사회적, 정치적, 심지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라는 단어가 구성원들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익 너머에 집단 안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얼마나 포용하고 있었는가는 매우 다른 문제이다. 나아가 울타리 밖에 있는 소수민족, 인종, 종교 등에 대한 끊임없는 배제와 선긋기, 그리고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되돌아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개인의 권리의식도 매우 높아졌다.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사람들은 개인의 인격적, 재산적 권리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사회는 복잡해졌고 국민들의 권리 간 갈등과 분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소통, 참여, 개방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시대와 맞물리면서 권리와 이익 충돌, 그리고 갈등은 복잡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갈등으로 혐오범죄의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대표적인 여성혐오에 따른 범죄라고 한다. 세월호 유가족,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 일본군 위안부,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표현도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혐오, 젠더

혐오, 지역혐오, 성소수자 혐오, 장애인 혐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전한 공론장인 인터넷은 혐오표현으로 끔찍한 폭력현장이 되곤 한다. 이견과 갈등이 사회적 합의로 조정될 것이라는 낙관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혐오표현은 결국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자와 차별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이들의 문제이다. 양자 간의 조화 속에서 규범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더 근본적으로는 양자 간의 조화란 가능한 것인지 우리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혐오표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혐오표현의 개념과 정의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혐오표현이란 “개인의 정체성”에 근거하고 있다(Chetty & Alathur, 2018). 혐오표현은 주로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성향, 직업, 성별 또는 장애와 관련된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해 “지역·민족·인종·국적·종교·장애·성별·성정체성·연령 등 일정한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해 차별·모멸·혐오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선동·선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승선, 2018).

둘째, 역사성을 지닌 소수자를 강조하는 관점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표현, 차별·혐오를 의도·암시하는 표현, 소수자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8-21쪽). 박용숙(2018)도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이라고 특정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대상 집단을 역사적 소수자로 국한하는 관점에서는 남성에 대한 혐오는 가능하지 않고 경상도 지역민을 공격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김수아, 2019; 전창영·나은희·최철호·김민정, 2018). 그러나 혐오표현의 대상으로서 소수자만을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명시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입장도 있다(박승호, 2019). 혐오표현의 해악은 다수이더라도 동일하고 다수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차별과 편견을 강조한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혐오표현을 “공격적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이주민들과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적대감 등 편협함에 기반한 인종혐오, 외국인혐오, 반유대주의 등의 증오를 전파, 선동, 선전 또는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Council of Europe, 1997,

107쪽). 알마고르(Almagor, 2011)는 혐오표현에서 선천적 특성에 따른 편견의 개념을 중요하게 봤다. 즉 "그들의 실제적이거나 인지된 선천적 특성 때문에 사람이나 집단을 겨냥한 편견적, 적대적,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혐오표현을 정의했다.

넷째, 공격적 표현뿐만 아니라 선동적 표현까지 포함한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혐오표현을 “통상 인종·민족·국적·종교·연령·장애·성별 그리고 성 정체성 및 성적지향 등과 같은 사람의 특성에 근거하여 사람 또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의 집단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현하거나 그와 같은 혐오를 선동·확산·조장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한다(헌법재판연구원, 2016, 8-9쪽).

따라서 혐오표현에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집단학살과 같은 행위는 제외된다. 혐오표현과 혐오범죄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혐오범죄는 신체적·물리적 폭력행위가 수반되는데 혐오표현의 쟁점은 신체적, 물리적 폭력행위가 없는 발언이나 표현행위를 법적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정다영, 2018). 그러나 목표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는 아니더라도 선동표현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박용숙(2018)은 선동표현이란 물리적 폭력과 혐오표현의 경계에 존재하는 표현행위라고 했다.

다섯째, 효과나 영향을 중요한 개념요소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일단 혐오표현이 발화되면 상처나 모욕은 희생자의 인지에 달려있다. 혐오표현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효과란 발화자, 내용, 목표대상(originator, content and the targeted one)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차별을 선동하지 않는다면(또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애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체티와 알라튀르(Chetty & Alathur, 2018)는 혐오표현에 ‘의도’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다. 살인미수가 범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희생자가 보호를 받듯 혐오표현에서도 ‘목적’과 그가 한 ‘행동’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혐오죄의 구성요건은 혐오의 감정 자체가 아니라 외부로 표출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외부의 행위가 형법적 규율대상이 되는 경우 내심을 동기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임중호, 2013).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혐오표현은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혐오표현이란 ①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원인)에 대해 ②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동기) ③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행위)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2)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표현의 자유’ 보호입장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방어논리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혐오표현과 차별이나 폭력의 상관성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Baker, 2012; Dworkin, 2009). 나아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법은 권력남용이 될 수 있고, 실효성이 없으며, 발화자 입장에서 자율성을 해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체제에 손상을 끼친다고 본다(Baker, 2009/2012; Dworkin, 2012; Heinze, 2016; Post, 2012; Strossen, 2012; Weinstein, 2017).

반면 규제주의 입장은 혐오표현의 해악성에 주목한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혐오표현이라는 행위자체로 발생하고 다음은 행위결과로서 발생한다. 혐오표현 행위는 그 자체가 인간존엄성에 대한 침해이다. 목표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불쾌한 감정과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게 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존엄성을 침해한다(Waldron, 2012). 또한 혐오표현의 행위결과로 특정집단이 침묵하거나 배제됨으로써 공론장이 왜곡되거나 폭력행위까지 초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을 부당하게 열등한 존재로 종속시키는 표현에 의한 피해, 그리고 혐오표현의 결과 여성들을 어떻게 침묵시키는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Gelber & McNamara, 2016).

또 발화 이후 행위결과로서 혐오표현의 해악은 네 가지 차원으로 발생한다. ① 청중들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도록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믿게 하고, ②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에 설득되도록 청중들의 선호(preference)를 형성하며, ③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나아가 차별이 정상적인 것처럼 작동되기 위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지며, ④ 청중들에게 모방행동을 일으키게 만든다(Maitra & McGowan, 2012).

브라이언 레빈(Brian Levin, 2009)은 ‘혐오 피라미드’를 통해 혐오범죄를 설명하고 있다. 레빈의 혐오 5단계는 1단계 편견적 태도, 2단계 편견적 행위, 3단계 차별, 4단계 편견으로부터 발생한 폭력, 5단계 집단학살이다. 단순한 편견으로부터 발생한 혐오표현이 집단학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온라인은 이질적이면서도 역동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확장된다(Citron, 2014; Cohen-Almagor, 2015; Delgado & Stefancic, 2014). 접근성, 수용자의 크기, 익명성, 즉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온라인 혐오는 오프라인 혐오와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혐오표현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더 인정될 수 있다.

인터넷이 자발적인 혐오표현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미 양적으로 온라인 혐오표현이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넘어섰고 이용의 편리함, 접근성, 저비용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우정을 쌓고, 연인을 찾고, 배움을 쌓고, 놀이를 하고, 민주주의 여론의 형태로 참여하며 살고 있다. 이는 자발적인 혐오표현의 주체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반대로 혐오표현으로부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Brown, 2018). 인터넷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관점은 혐오표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Weede, 2016; Cole, 2016; Keipi et al, 2017). 공격적인 집단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데 있어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Balica, 2017).

각국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법은 매우 다양하다(Chetty & Alathur, 2018). 특히 지난 50여년 간 미국과 유럽에서 혐오표현 정책은 매우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왔고 유럽의 국가들은 혐오표현 규제 법을 강화해왔다. 정치·문화적 요인, 법률과 사법적 규범에서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Bleich, 2014).

그러나 혐오표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상이한 법제와 규범은 국경없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국제적인 규범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Alkiviadou, 2016). 특히 유럽의 많은 학자들은 미국의 표현의 자유 보호관점이 유럽식의 인터넷 규제 체계의 구축을 방해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Banks, 2011). 따라서 유럽 밖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교육적, 법적 규제를 활용하는 시민, 산업, 정부의 광범위한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테러와 상당히 관련이 있고 특히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은 테러 공격을 야기하거나 촉진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Chetty & Alathur, 2018). 특히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상업적 목적의 표현물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규제 아웃소싱을 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겠지만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기지 않는다면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Brown, 2018).

3) 혐오표현 관련 국내 법률과 규제

우선 형사적 규제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이 가능하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목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목표

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의 경우 집단규모가 크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민사적 규제방법도 있다. 혐오표현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일부 적용할 수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전창영·나은희·최철호·김민정, 2018; 홍성수, 20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4조의 7에서는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제2호),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정보(제3호), 그 밖에 범죄 목적이나 교사 또는 방조 정보(제9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 외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은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등의 금지)에서는 장애인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1항), 장애를 이유로 집단따돌림, 모욕감이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금지(제3항)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그 외에 성별, 성적 지향에 근거한 혐오표현 중 성희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이 가능하다(홍성수, 2016). 이러한 법률은 여성,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개인의 구제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혐오표현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규제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 심의 및 시정요구가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4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제8조 3호 바목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자율규제로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심의결정이 있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제21조는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혐오표현 심의 현황과 특징

1) 혐오표현의 심의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혐오표현을 유해정보로 보고 있다. 심의절차는 일반인 신고, 관계기관 심의신청,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대상을 인지한 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결정을 한다. 통신심의규정 위반 시 시정요구는 해당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가 있다. 외부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가 자문기능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에 대해 차별·비하·증오하는 내용을 담은 ‘혐오표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2018 방송통신연감, 128쪽).

2018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 분석결과 혐오표현 심의는 2,04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혐오 411건(20.1%), 남성 317건(15.5%), 지역 533건(26.0%), 위안부피해자·역사 왜곡정보 121건(5.9%), 노인,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등 특정대상 254건(12.4%), 불분명 413건(20.1%)으로 나타났다. 위안부피해자와 역사왜곡 정보에는 위안부와 독립유공자, 5.18광주민중항쟁 관련 표현물들이 제재를 받았다. 특정대상에 대한 혐오표현은 나이(노인), 인종(동남아인, 흑인), 민족(조선족), 국가(중국인, 화교), 계층(외국인노동자), 종교(기독교, 유태인, 이슬람), 직업(경찰, 군인, 소방관), 학력(지방대생), 소수자(장애인, 성소수자) 등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었다.

심의제재 현황은 전체 1,959건 중 1,948건(99.4%)이 삭제 조치되었고, 접속차단이 6건(0.3%)이었으며 심의를 하되 제재받지 않은 사례는 한 건만 발견되었다. 2천 건 가깝게 혐오표현이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 안전으로 상정되기만 하면 대부분 삭제 조치되는 것이다. 특히 회의록을 보면 방대한 심의견수를 일일이 다 확인하여 검토하기에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무처 의견대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제12차, 제14차, 제27차, 제41차, 제47차 회의록 등 다수)⁶⁾

제재대상과 제재기준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혐오표현에 대해 사무처가 18건을 상정하면 18건이 삭제되고(제67차 회의록), 180건을 상정하면 180건이 삭제되는 상황(제57차 회의록)이다. 혐오표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함에도 심의대상을 선정방식부터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집중심의라는 명분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2018 방송통신연감>(128쪽)에서도 혐오표현 규제에 해당하는 차별·비하에 대한 심의가 2,638건(57.3%)이었고 시정요구는 2,352건으로 나타나 전체회의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에 특정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심의를 할 경우 여성혐오 건수가 높을 수도, 반대로 남성혐오의 건수가 높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만을 본다면 실제 어떤 분야의 혐오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고 나아가 현실을 왜곡할 우려마저 있다.

제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3호 바목을 적용한다.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3호 바목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목적, 대상, 조항 적용 등에 있어 적합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저 ‘비하가 심하다’거나 ‘조롱한다’는 근거로 제재결정을 내리고 있다(제63차 회의록).⁷⁾ 나아가 혐오표현 중 제8조3호 바목만을 적용하지 않고 제6조제5호(헌정질서 위반 등)와⁸⁾ 함께 적용하는 사례(제34차 회의록), 제8조3호다목⁹⁾을 함께 적용하는 사례(제43차 회의록)도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제8조3호바목의 기준 적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심의위원들도 심의를 하면서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⁰⁾

7) 당시 회의록에 판단기준에 대해 묻는 A위원에게 담당팀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일단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그 다음에 특정대상이든, 소수층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을 하고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9)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10) B위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있다. “한편으로 이게 누가 봐도 어이가 없어서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아예 그냥 고려의 대상이 아닌,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편견을 조장할 것이다, 선동할 것이다,라고 취급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것을 찾아내서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면 조회수도 적고 읽는 사람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은 한다, 안한다는 기준을 또 임의로 설정하기는 참 어려워서 나중에 심의기준에 대해 한번 논의해볼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 1> 2018년 혐오표현 목표집단별 심의건수

구분	여성	남성	지역	위안부피해자 역사왜곡정보	특정대상	불분명	합계
건수	411	317	533	121	254	413	2,049
%	20.1	15.5	26.0	5.9	12.4	20.1	100

* 통신심의소위 2018년 회의록 언급기준

** 위안부는 특정대상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일부 포함됨

*** 회의록 발언내용을 분석했기 때문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음

<표 2> 2018년 혐오표현 제재유형별 건수

구분	해당없음	삭제	접속차단	의견진술 기회부여	심의중지	자율규제 권고	합계
건수	1	1,948	6	1	2	1	1,959
%	0.1	99.2	0.3	0.1	0.2	0.1	100

*의견진술 기회부여와 자율규제 권고는 동일사안임

*회의록에서 언급된 발언내용을 분석했기 때문에 목표집단별 심의건수와 합계가 다름.

2) 혐오표현 심의의 특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심의현황을 검토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나이, 인종, 민족, 국가, 계층, 종교, 직업, 학력, 소수자 등 혐오표현에 대해 광범위하게 심의 및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지역혐오(26.0%)가 가장 많았고 여성혐오(20.1%), 남성혐오(15.5%), 특정대상(12.4%), 위안부 피해자·역사왜곡(5.9%)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불분명한 경우(20.1%)도 나타나고 있어 추후에 정확한 통계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법규제가 추진 중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등이 포함되어 이미 규제를 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둘째 규제대상의 적절성 문제이다. 자의적인 규제를 하면서 남성혐오와 여성혐오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현실적으로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성소수자 혐오표현 규제, 지역혐오 문제의 심각성 등도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가운데 이미 행정기관에서는 삭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심의안건 상정과 제재방식의 문제이다. 심의안건이 실무자에 의해 상정되면 대부분 삭제조치가 되고 있다. 하루 심의안건 수는 적게는 18건에서 많게는 180건까지 등장했다. 이는 동일한 인터넷이라는 조건에서 심의안건이 특정한 시기에 많고 적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규제기관의 의지에 따라 심의건수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이는 자의적 심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나아가 상정된 안건 중의 99.4%가 삭제처리되고 있다. 상정되기만 하면 곧 삭제조치되는 것이다. 복수의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 제재조치하는 심의과정이 의미가 없게 된다.

넷째, 심의방식의 문제이다. 작년 한 해 삭제 조치된 혐오표현 건수는 1,948건이다. 적지 않은 혐오표현이 삭제되었는데 대부분 회의에서 위원들 간 집중적인 심리와 검토도 부재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적절하게 처리된 것인지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심의할 때마다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혐오표현 관련 판결동향과 특징

1)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및 명예훼손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¹¹⁾ 법원은 1, 2심에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저녁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아나운서연합회 회원인 여성 아나운서 154명의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는 154명이고 아나운서연합회에 등록된 아나운서의 수는 295명에 이르며, ‘여성아나운서’라는 집단은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집단의 명칭으로서 그 중에는 이 사건 고소인들이 속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아나운서연합회에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존재하므로 ‘여성아나운서’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조직화 및 결속력의 정도 또한 견고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신도수 800여 만명에 이르는 종교인, 2,000여명이 넘는 정신과 전문의들도 당연히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2012년 6월 23일 MBN <시사기획 맥>에서 ‘도를 아십니까’ 제목으로 거리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취재한 후 해당종교에 빠져 가정을 등진 가족을 두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도하였다. 이에 법원은 ‘대순진리회 소속 신도수가 약 800여 만 명에 이르는 점.....임원인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한 표현이 사용되지는 아니한 점...’을 이유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가단198734 판결).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표현에 대한 판단에서도 “전국에서 정신과 병원을 개업하여 진료중인 정신과 의사 수는 약 813명에 이르고, 최근 정신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연간 100명을 초과하여, 2008년 현재 정신과 전문의가 2,349명에 이르러 그 구성원 수가 매우 많은 점”이 고려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12. 9. 12. 선고 2012나 38409 판결).

결국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가 특정되기 위해서는 집단의 규모나 수, 성격, 주위정황 등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이 현행법으로 처벌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11)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 참석해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해 무고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법원은 1심, 2심에서 강용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가 아님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한 것이다.

2) 모욕적이거나 경멸적 표현

다음으로는 모욕적이거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본다.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역사학자이자 대학교수에게 ‘김일성 찬양론자로 머리가 돌아버린 공화국 영웅’ ‘현실상을 부정하는 자기도취자’라는 표현을 한 칼럼에 대해 “피고(언론사)가 원고와 아무리 역사관 및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이념적 대립이 극심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이다. 이는 언론의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506507).

반면 ‘사악하기 그지 없다’ ‘신앙심을 이용한 행태’ ‘전문성 부족’ ‘신앙적 사기’ ‘해괴한 책’ 등의 표현에 대해 법원은 그 대상이 목사로서 ‘종교인들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적 특성상 그에 대한 종교적인 비판은 모욕을 주거나 인신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된다’고 하면서 ‘표현이 다소 과격하다 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카합50504). 이 판결은 기사삭제청구 소송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대상이 목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즉 공인에 해당하므로 모욕적 표현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있어 그 표현이 법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에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위의 ‘교수사례’와 ‘목사사례’만 보더라도 표현내용만 본다면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과 ‘표현이 다소 과격하다 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되는’ 표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최근 대법원 판결로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중복’, ‘주사과’ 등의 표현에 대해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상황제시가 있는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대법원은 “‘극우’든 ‘극좌’든 ‘보수우익’이든 ‘중복’이나 ‘주사과’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이 결정에는 피해자의 지위가 공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¹²⁾ 다만 이 판결문에서 제시된 소수의견이 본고가 다루는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맞닿아 있어 옮겨본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복, 주사과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측면이 있다.....(중략)....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이 가능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차별과 배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된 표현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우리 대법원에서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3) 혐오표현 관련 판결의 특징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혐오표현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판결을 검토하였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원칙적으로 집단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단 내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때에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

12)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이 미디어위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복’, ‘주사과’,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책임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1, 2심은 변희재 씨 등이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정희 전 대표 부부에게 위자료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3) 소수의견은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수만 명에 이르는 종교집단, 특정직업군 등의 경우 규제하기 어렵다. 법원은 여성 아나운서와 같이 성별과 직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집단의 명칭도 모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혐오표현과 같이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데 현행법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여성 아나운서란’이라는 식의 여성혐오적 표현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둘째 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객관적 타당성,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제시했다. 또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법원의 기준은 향후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원칙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일한 표현이더라도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거나 ‘그러한 표현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는 기준이 나타나고 있어 현실 속에서 항상 명확하지는 못하다는 한계는 극복해야 한다.

셋째 대법원의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논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이 의견표명에 해당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는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측면이 있다”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혐오표현처럼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5. 혐오표현 관련 국회 입법 현황

1) 규제방식과 내용

우선 형법을 통한 규제 법안이다. 안효대 의원 법안은 형법에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의안번호 5550호, 2013. 6. 20.). 다문화가정, 외국인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종차별적 발언과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차별적 발언을 규제하려는 목적이다. 신설된 형법 제311조의2(혐오)는 친고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2016년 자동폐기됐다.

혐오표현에 대한 개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부겸 의원은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의안번호 11936호, 2018. 2. 13.). 이 법안에서는 혐오표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18조). 또 혐오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악의적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을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6조). 일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부겸 의원법안에는 국가가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조치나 필요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안 제6조).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안 제7조). 혐오표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안 제9조,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안 제11조).¹⁴⁾ 그러나 김부겸 의원 법안은 일부 종교계의 반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되었다.

온라인 혐오표현이 중요해진 만큼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규제강화도 시도되었다. 신용현 의원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혐오표현을 신설하여 금지하고 있다(의안번호 14522호, 2018. 7. 24). 박선숙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외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었다(의안번호 14522호, 2018. 7. 24). 이 법안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불법정보로서 혐오표현을 포함하였다(안 제22조의5 제1항). 신용현 의원 법안도 김부겸 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었다.

국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혐오표현 규제방안도 있다. 이철희 의원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의안번호 18768호, 2019. 2. 22). 박지원 의원(의안번호 65호, 2016. 6. 1)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안 제8조).

마지막으로 여성혐오와 관련된 법안이다. 정춘숙 의원은 여성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의안번호 12065호, 2018. 2. 21)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

14) 혐오표현규제법안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혐오표현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의안번호 11934호, 2018. 2. 13.).

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폭력예방교육 등을 담고 있다.

<표 3> 국회에서 발의된 혐오표현 관련 주요 법안(19대 국회~20대 국회)

순서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제안 일자	제·개정 법안	주요내용	결과
1	5550	안효대 (50)	2013. 6. 20.	형법	혐오죄 신설, 외국인 혐오, 지역감정 등 차별적 발언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기 만료 폐기
2	11936	김부겸 (20)	2018. 2. 13.	혐오 표현 규제법	·혐오표현 행위 규정 ·혐오표현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시행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권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권 ·손해배상 책임 및 징벌적 배상금 ·혐오표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철회
3	11934	김부겸 (20)	2018. 2. 13.	국가 인권 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추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혐오표현 포함	철회
4	15603	신용현 (10)	2018. 9. 18.	정보 통신망법	불법정보로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 편견 조장내용' 금지 방통심의위 심의, 방통위 시정명령권	철회
5	14522	박선숙 (10)	2018. 7. 24.	전기 통신 사업법	부기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등 유통방지조치 불법정보에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 포함. 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 정보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국내대리인 지정. 과기정통부, 방통위원회 시정명령권	대안 반영 폐기
6	18768	이철희 (166)	2019. 2. 22.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계류
7	65	박지원 (38)	2016. 6. 1.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계류
8	12065	정춘숙 (15)	2018. 2. 21.	여성 폭력 방지기본 법	여성폭력 정의, 여성폭력방지정책 수립, 지원시스템, 폭력예방 교육 등	수정 가결

*() 숫자는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수

2) 규제대상과 행위

안효대 의원은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를 규제대상으로 했다. 주로 다문화가정, 외국인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차별적 발언을 규제하려는 목적이다.

김부겸 의원의 혐오표현규제법안은 규제대상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혐오표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행해지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행위”를 말한다(안 제2조). 그리고 금지되는 행위로는 ① 차별, 폭력 또는 증오 선동·고취 행위 ② 멸시·모욕·위협 행위 ③공개적 보급이나 게시·배포 행위 ③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 행위이다(안 제2조).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부 대상을 특정하되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되는 표현으로 규정하였다. 박선숙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불법정보로서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라고 했는데(안 제22조의5 제1항) 다소 포괄적인 정의이다.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의 의무가 더 강화된다. 혐오표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신용현 의원 법안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혐오표현을 포함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외국에 본사를 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였다(박선숙 의원 법안 제22조의5, 제22조의 6).

박지원 의원 법안에는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며 위반행위로는 ①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②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③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안 제8조).

그런데 5·18민주 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므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역사나 역사관에 대한 진리논쟁은 문화적 과정이지 법적 과정이 아니어서 형법의 보호범위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다(남궁석, 2016).

여성혐오와 관련해서는 젠더폭력보다는 여성폭력에 머무르고 있다. 정춘숙 의원 법안에서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은 2018년 12월 5일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표 4> 혐오표현 행위에 대한 정의

순서	법률	대표 발의자	정의	의결 여부
1	형법	안효대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	입기 만료 폐기
2	혐오표현 규제법	김부겸	합리적인 이유없이 행해지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행위	철회
3	정보통신망법	신용현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철회
4	전기통신사업법	박선숙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	대안 반영 폐기
5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이철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	계류
6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박지원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	계류

3) 혐오표현에 대한 법률안의 특징

첫째 혐오표현과 관련한 적지 않은 법률안은 입법기관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다만 법률안이 철회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도 의미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해 기존 법률의 개정안, 특별법 제정안 등 다양한 형태로 발의되고 있다. 형법에 혐오표현 조항을 신설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를 신설하는 경우이다. 아예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단독으로 발의하기도 했으며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혐오표현규제법안의 경우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둘째 법률안대로라면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수위가 낮은 편은 아니다.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효대 의원 법안)이었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김부겸 의원 법안),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박지원 의원 법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철희 의원 법안)도 있었다. 제재가 엄중하다는 의미는 법률이 그 만큼 명확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유의깊게 살펴볼 문제이다.

셋째 혐오표현의 목표집단의 문제이다. 목표집단이 광범위하거나 반대로 협소하게 접근하는 한계이다. 대표적으로 혐오표현규제법안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피부색 등 신체조건부터 혼인여부, 가족형태, 정치적 의견 등 지나치게 많은 기준들을 나열함으로써 거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혐오·차별 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라고 하여 규제대상이 예측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반대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는 젠더혐오를 포괄하지 못하고 여성혐오로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넷째 혐오표현의 규제행위도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법률 제·개정안에서 규제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혐오표현규제법안에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동·고취행위, 멸시·모욕·위협 행위, 게시·배포행위,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행위는 서로 간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형사적 처벌대상으로 적합한지도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박지원 의원 법안)도 부인, 왜곡 등 명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나 정당한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규제주체의 문제이다. 혐오표현의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은 위헌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권,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등이 보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권의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무 강화가 형식적 자율규제에 그치거나 사적 검열로 악용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6. 혐오표현 규제 방향과 제언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국회 입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현행법 하에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혐오표현 심의는 최근 매년 수천 건 씩 이루어지고 있고 삭제조치 되고 있다. 현행 법으로 한계를 보이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데 진통을 겪는 반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심의와 제재는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혐오표현 규제와 심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적 규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성소수자, 5·18광주민중화운동 관련 혐오 등 개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기 때문에 논의가 더 어렵다. 따라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공론화 및 합의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소수의견과 다양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혐오표현의 규제의 정당성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현의 자유 보호의 본래 취지로 돌아간다면 소수자 보호를 위한 공론장 규제는 오히려 정당하다. 또 과거와 달리 인터넷 시대인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그 정당성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둘째, 혐오표현의 목표집단과 규제대상이다. 혐오표현은 특정집단을 사회적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규제대상을 설정할 경우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물론 그 범위는 ‘인간적 속성’(원인)에 근거한 ‘차별과 배제’(동기)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행동)에 있어야 한다. 그 외에 사실이나 역사왜곡과 관련해서는 혐오표현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칫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혐오표현 규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5·18광주민중화운동 문제는 혐오표현 규제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현행법 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혐오표현의 규제방식이나 규제주체의 문제이다.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가급적 정부의 직접 규제 방식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 일일이 수천 건의 표현물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 세상에 있는 유사한 표현을 모두 삭제하지도 못한다면 규제 형평성, 일관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규제기관은 사업자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최소한의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수아(2019). 온라인 글쓰기 문화와 혐오표현 문제. <한국사전학회 제34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97-115.
- 남궁석(201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 발의, 제65호) 국회 검토보고.
- 박승호(2019).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31(3), 45-88.
- 박용숙(2018)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법학논집>(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38(2), 27-6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9). <2018 방송통신심의 연감>.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승선(2018). 공적 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 연구>, 18(2), 107-146.
- 이승현(2016).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공법연구>, 44(4), 133-166.
- 이정념(2019).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와 그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기준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30(1), 337-360.
- 임중호(20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제5550호) 검토보고.
- 정다영(2018).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1(2), 124-164.
- 조규범(2017).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현안보고서 306호) 서울:국회 입법조사처.
- 헌법재판연구원(2016).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이론과 실무보고서, 2016-A-3.
- 홍성수(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홍성수(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10(3), 1-38.

[해외문헌]

- Alkiviadou, N. (2016) Regulating Internet Hate: A Flying Pig?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lectronic Commerce Law*, 7(3). 215–228.
- Almagor, R. C.(2011). Fighting hate and bigotry on the internet. *Policy & Internet*, 3(3), 1–28.
- Baker C. E. (2009) Autonomy and hate speech. In: Hare I, Weinstein J (eds) *Extreme Speech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ker, C. E. (2012). Hate speech. In M. Herz & P. Molnar (Eds.),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pp. 57-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ica, R. (2017). The criminalization of online hate speech: It's complicated. *Contemporary Readings in Law and Social Justice* 9(2), 184-190.
- Banks, J. (2011). European regulation of cross-border hate speech in cyberspace: The limits of legislation.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19, 1-13
- Bleich, E.(2014). Freedom of expression versus racist hate speech: Explaining differences between high court regulations in the USA and europ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0(2), 283-300.
- Brown, A.(2018). What is so special about online(as compared to offline) hate speech? *Ethnicities*, 18(3), 297-326
- Chetty, N. & Althur, S.(2018). Hate speech review in the context of online social network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0, 108–118.
- Citron DK (2014) *Hate Crimes in Cyberspac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Almagor R (2015) *Confronting the Internet's Dark Side: Moral and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Free Highwa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 M. (2016). Imperialism and Racialised World Capitalism or Intercultural Twenty-First Century Socialism, *Knowledge Cultures* 4(6), 228-249.
- Council of Europe(1997)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 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505d5b](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505d5b)
- Delgado, R. & Stefancic, J. (2014) Hate speech in cyberspace. *Wake Forest Law Review* 49, 319-343.

Dworkin, R. (2009). Foreword. In I. Hare & J. Weinstein (Eds.), *Extreme speech and democracy* (pp. v-i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workin R (2012) Reply to Jeremy Waldron. In: Herz M, Molnar P (eds)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elber, K. & McNamara, L.(2016). Evidencing the harms of hate speech. *Social Identities*, 22(3), 324-341.

Heinze E (2016) *Hate Speech and Democratic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eipi, T., Matti N., Atte O., and Pekka R. (2017). *Online Hate and Harmful Content: Cross-National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Levin, B.(2009). The long arc of justice: Race, violence, and the emergence of hate crime law. In: Perry, B., Levin, B., Iganski, P., Blazak, R., & Lawrence, F. M.(eds) *Hate Crimes*(pp.1-22.). Greenwood Publishing Group.

Maitra, I., & McGowan, M. K. (2012).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I. Maitra & M. K. McGowan (Eds.), *Speech and harm: Controversies over free speech* (pp. 1-2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ost, R. (2012) Interview. In: Herz M, Molnar P (eds)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rossen N (2012) Interview. In: Herz M, Molnar P (eds)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dron, J. (2012). *The Harm in Hate Speech*, Harvard University Press.

Weede, E. (2016). Geopolitics, Institutions, and Economics: On the Rise and Decline of Civilizations, *Geopolitics,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8(1), 177-220.

Weinstein, J. (2017) Hate speech bans, democracy and political legitimacy. *Constitutional Commentary* 32.

언론의 혐오표현 현황과 대안 1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

‘혐오표현의 진단과 대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번 토론회의 초점은 아무래도 ‘대안 마련’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적인 영역 중 하나가 이번 세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언론’으로 생각된다.

다른 사회현상에 대한 언론보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내지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유명인이라든가, 정치인, 연예인의 혐오발언을 언론이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가리켜 “발화자의 혐오와 차별인식에 사실상 동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언론이 발화자의 혐오표현 도달범위와 위력만 더 키워준 것”이라고 한 김언경 사무처장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윤성욱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도 현재 우리 사회가 혐오표현에 대처하고 있는 방식과 현주소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의 현실과 관련하여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심의대상으로서의 적절성이 의심될 수도 있는 대상들(광주민주화운동, 남성혐오 등)에 대한 심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등에 깊이 공감되었다. 심의안건 상정과 과정상의 문제점¹⁵⁾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두 분 발제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토론문이기 때문에 체제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보려고 한다. 토론자의 의견이 혐오표현에 대한 대안 마련이라는 이번 토론회의 취지에 다만 얼마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논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흔히 ‘언론’이라고 하면 요즘 대세인 유튜브를 비롯하여 SNS, 블로그, 게시판과 같은 매체 또한 포함하는 뜻으로 이해한다.

15) 실무자에 의해 상정된 안건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되고 있고, 안건 상정에 규제기관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토론문에서의 ‘언론’은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매체, 다시 말해 신문·잡지·방송·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의 언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문제까지 모두 다루려다 보면 자칫 논점이 흐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매체를 전제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또, 언론 스스로 혐오표현을 담은 기사를 보도한 경우와 취재원의 혐오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의 경우를 구분하고자 한다. 두 경우를 동일 선상에 놓고 논의하기에는 그 차이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전자의 경우가 문제라는 것에는 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 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 언론 스스로 혐오표현을 담은 기사를 보도한 경우

언론에 의한 혐오표현과 방송통신심의에서의 혐오표현 현황은 이미 발제자들께서 자세히 다뤄주셨다. 다만, 발제에서 다루지지 않은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현황과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행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에서는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하며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동안 총 7건의 인터넷신문기사¹⁶⁾에 대한 시정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심의기준 위반 기사의 제목과 시정권고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p>성폭력 유도 성공하면 로또 당첨? 남성들 성폭력 두려워 여성접근 고민... 출산저하로 이어져 일부여성 직장 다니는 것은 부업... 성폭력 걸리면 합의금 뜯어내는데 혈안</p>	<p>일부의 사례를 일반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표출하는 편견적 표현에 해당</p>
--	--

16) 대상 매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인터넷신문들(**뉴스닷컴, **경제신문, **웹, **데일리 등등)이다.

폭행 무혐의에도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가 들은 말?... '김여사가 그렇지'	'김여사'라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경멸적 표현에 해당
정유미 주연 SNS 막장 소설 짜낸 작가들, 모두 여자... "소문만 전했을 뿐인데"	범죄혐의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영상] 차알못 김여사도 이제 걱정 끝! 훈내진동 티볼리	'김여사'라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경멸적 표현에 해당
제천 김여사? 승용차 약국 돌진... 운전미숙 추정	'김여사'라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경멸적 표현에 해당

올 상반기 동안의 결과지만, 아직 혐오표현 내지 차별 금지와 관련된 시정권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수도 적고, 모든 건이 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신문보도였다. 또 방송통신심의 절차에 대한 윤성욱 교수님의 지적은 대체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 비공식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앞으로 이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숙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록 적은 건수이긴 하지만, 언론 스스로 혐오표현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을 언론은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끄러운 현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방송통신심의와는 다르게, 시정권고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다. 또, 여러 가지 법리상의 문제들(당사자 특정,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저하, 인신공격적 표현의 범위 등)로 위와 같은 사안들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적용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남은 방안은 김언경 사무처장님께서 제안하신 가이드라인의 제정 혹은 새로운 준칙·가이드라인의 제정이며 플랫폼 사업자의 노력인데 이러한 기사들을 주로 생산해내는 언론사들이 대체로 영세한 규모의 인터넷매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2. 취재원의 혐오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의 경우

1) 언론이 혐오표현의 동조자 내지 확산자로 비판받는 이유: ‘객관주의’ 전통

현재 혐오표현과 관련해서 언론이 동조자 내지는 확산자로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혐오표현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실수로 그런 보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상업적 이유가 클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의 중심에는 언론의 ‘객관주의’ 전통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비유컨대, 이 문제에 관한한 기자들은 ‘확신범’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다.

개인적으로 처음 ‘객관주의’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낀 때가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회였다.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 언급하는데 토론회에 참석한 기자들의 반응이 정말 시큰둥했다. 자살은 사회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인데 그것을 보도했다고 해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나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식이었다. 알리는 것이 기자의 일인데, 일어난 사건을 알리지 말라는 시각에 대해서 기자들은 썩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했다. 김언경 사무처장님의 발제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범죄보도에서 기자들이 흔히 하는 잘못 중 하나가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수사기관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의자의 주장이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합리화 또는 변명이기 쉽다. 수사기관 관계자의 진술 역시 아직 초동수사 단계라면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을 것이다. 설사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었다손 치더라도 수사 단계는 아직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며 수사기관은 형사재판의 일방 당사자일 뿐으로 타방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피의자 및 변호인에 대한 취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보도는 구조적으로 편파적이기 쉽다.

한편, 여전히 핫한 이슈 중 하나인 ‘가짜뉴스’의 확산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객관주의’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유튜브브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이지만 이러한 가짜뉴스를 유력 정치인이 인용할 경우, 언론은 기사로 다루게 되며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는 언론을 통해 보다 널리 확산되고 더불어 신뢰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은 이러한 가짜뉴스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그는 이렇게 말했고 그녀는 이렇게 말해고’와 같은 취재 대상과의 거리 두기를 통한 전통적인 객관주의 취재기법이 일정 부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¹⁷⁾

이처럼 자살보도, 범죄보도, 가짜뉴스에 이어 현재 논의하고 있는 혐오표현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언론의 ‘객관주의’ 전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언론보도라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다’고 보도하면 충분한지, 이런 것이 정말 객관주의인지 의문이다.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고 언론은 그저 인용 내지 전달했을 뿐이니 발화자의 책임과는 별개로, 언론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가. 이제는 ‘객관주의’라는 전통을 진지하게 재검토해봐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한편, 최근에 가짜뉴스와 관련해 나온 대안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인데, 외부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한계가 명백하다고 본다. 한쪽에서는 일단 쓰고 보고, 다른 쪽에서는 그 발언이 맞는지 사후적으로 체크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혐오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 기사가 문제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요즘 ‘인용보도’에 관한 법원의 판결태도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

2) 인용보도에 대한 판결의 입장

인용보도에 관해서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 혹은 ‘따옴표 저널리즘’과 같은 오명이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기자들 중 상당수는 따옴표를 붙이지 않은 것을 오히려 문제시하며 인용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 태도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소송에서도 기자들은 자신이 쓴 인용보도가 문제되면 대체로 그와 같은 발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쓴 것일 뿐, 그 발언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만일 이러한 기자들의 항변대로라면 기자들은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움으로써 비교적 쉽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용보도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결태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생각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17) 2019년도 중재위원 연수 자료집, 19쪽: 관련 내용에 대해 정은령 센터장께서는 ‘허위정보의 무한생산 루프와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비록 기사에서는 인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 따라 인용된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다시 말해 발화자의 발언에 내용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4년 9월, 가수 승리는 서울 강남에서 열린 소속사 파티에 참석한 후 귀가하는 길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강변북로를 달렸다. 하지만 과속으로 인해 그만 앞서 달리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감지기로 2회에 걸쳐 승리의 음주 여부를 검사했으나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이 사고는 단순 과속에 의한 사고로 종결됐다.

승리의 사고 소식을 알게 된 기자 A는 트위터에 관련 글도 올리고 아래와 같은 2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A 기자는 두 번째 기사에서 ‘승리가 파티에서 술 마시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기사나 트위터 글에서 승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쓰지는 않았다. 두 번째 기사에서 승리가 파티에서 술 마시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음주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승리는 A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번째 기사로 인한 기자의 손해배상책임(700만원)을 인정했다.

기사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단5277893 판결)

최근 YG엔터테인먼트는 급격하게 사세를 확장시키고 있었다. LVMH(루이비통모에에네시)그룹 계열 사모펀드 L캐피탈 아시아로부터 8000만 달러(약 827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삼성 제일모직과의 합작으로 패션 브랜드 ‘노나곤’을 론칭했다.

YG 양현석 대표는 LVMH, 삼성 제일모직과의 협력의 의미에 대해 미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출발지점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패션이나 화장품의 영역에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서울 논현동 클럽 옥타곤에서 개최된 노나곤 파티 직후 사고가 터졌다. 행사에 참석한 빅뱅 멤버 승리가 새벽에 포르세 승용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질주하다가 앞서 가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 공개된 승리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차로에서 달리던 승리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 두 차선을 바꿔 무난하게 달리던 벤츠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승리의 난폭운전에 대중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과속에 음주운전에 대한 의혹까지 일고 있지만 YG는 흔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확인했지만 대중은 더 이상 YG를 믿지 못하게 됐다.

2014.9.14. 『잘나가던 YG, ‘승리 폭주’에 브레이크!』

오히려 노나곤이 유명세를 탄 것은 빅뱅 멤버 승리의 교통사고 때문이다. 노나곤은 지난 11일 청담동 클럽 옥타곤에서 론칭 파티를 개최했다. 양현석 대표는 싸이, 빅뱅, 2NE1, 최지우 등 자사 소속 연예인들을 총동원했다. 그런데 승리가 새벽에 포르세 승용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난폭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벤츠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나곤 파티에 참석했다는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는데 왜 음주측정에 걸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 “행사에 참석한 YG 연예인들은 간단한 인사 후 곧바로 회사 차량을 이용해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승리가 새벽에 자신의 포르세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강변북로를 질주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승리에게 관련한 어떠한 의혹을 일축했다.

2014.9.19. 『‘승리 사고’로 더 유명해진 ‘노나곤’,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한편, 2014년 3월과 4월 <TV조선>과 <채널A>은 대담 형식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당시 향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유오성 씨에 대해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취지의 외부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에 내보냈다. 이러한 방송에 대해 유오성 씨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널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반면, <TV조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이 재판에서 <TV조선>은 소속 기자가 취재한 정식보도가 아니라 앵커와 외부 출연자와의 대담을 통해 외부출연자의 정치적 의견이 보도된 것에 불과하므로 면책되거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4가합548118 판결)

언론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전파력과 우리 사회가 언론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에 비추어 외부인사의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일반 시청자에 대한 설득력이나 파급력은 물론 그 진위 판단에 이르게 되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언론사의 일련의 보도 중에서 통상적인 방식의 일반 기사와 외부인사의 인터뷰 등에 의한 보도를 형식적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관하여는 언론사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한다면 앞서 본 언론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상충하는 권리와 법익의 균형 있는 조화 속에서 피해자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론사가 섭외 및 대본편집권한 등을 통하여 외부인사의 견해 등을 취사선택하고 그 보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사의 발언에 의견표명 외에도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전제 정도를 넘어서는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로서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TV조선>과는 달리 원고청구가 기각된 <채널A>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피고 채널에이가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 H, 북한전략센터 대표 E를 초대하여 앵커와의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인데, 위 보도 중 원고를 간첩으로 확신한다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채널에이는 위 H, E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의견이 주관적이고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방송 중에 ‘원고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본 내용은 탈북자 개인의 사건임을 밝힙니다.’라는 자막을 상당시간 동안 함께 방송하였다. 또, 위 프로그램을 진행한 앵커는 위 출연자들의 발언이 주관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 적절히 개입하였고, ‘개인 생각이시죠’, ‘법적인 견해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건임을 전제로’ 등 수차례에 걸쳐 출연자 개인의 견해임을 주지시키기도 하였다.

이 두 개 판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언론이 인용의 형식을 취했다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용된 발언의 내용을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의 입장과 태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의 입장을 고려할 때,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3)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앞에서 다룬 ‘언론 스스로 혐오표현을 담은 기사를 보도한 경우’는 주로 영세한 규모의 언론에 해당되는 문제다. 그에 반해서, ‘취재원의 혐오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는 주류 언론을 포함을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 적용된다. 특히, 주류 언론에 관해서는 기자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완,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제정 및 보완 외에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회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 것은 물론이고 협회에서 주는 ‘이 달의 기자상’ 심사의 중요한 요건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기사였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기사에 관해서는 상을 주지 않고 있다. 자율적인 선을 넘지 않으면서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끔 유도한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방안은 인권위 차원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가 전면에서 나서야 할 것이다.

언론의 혐오표현 현황과 대안 2

김동훈(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한겨레신문 기자)

1.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의 실태

1) 신문·방송 등 정통 매체보다는 팟캐스트·온라인 등 뉴미디어 영역

-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매체가 언론의 주류였다. 정통 매체는 기본적으로 게이트 키퍼 기능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매체가 다변화하면서 걸러지지

않는 표현들이 난무한다. 신문·방송 등 정통 매체는 심의 규제를 받지만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에는 허점이 있는 게 현실이다.

2) 언론 생산자(기자 등)의 이해와 인식 부족

(국가인권위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보고서 중에서 발췌)

“성희롱 관련 가이드라인은 생겨서 미투가 있기도 해서 아직 부족하지만 의식을 하는데 아직 까지 혐오표현 관련해서는 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보도국 내부에 성소수자가 있을 꺼다 일베나 워마드나 메갈리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하고 (취재 후 그 대상이)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거나 ...”

“사건 기자는 대개 회사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처지이고 취재 이후의 기사의 표현을 다듬는 사람들은 부장들인데, 부장들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데스크와 온도차가 크다고 느낀다. 최근의 난민 이슈라던가 젠더 관련된 시위라든가... 성소수자 시위 퀴어문화축제의 경우 꼭 찬반 논란으로 쓰라고 하는데... 동성애는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예 그런 인식 자체가 많이 없다.”

2. 혐오표현 인식 개선을 위한 제언

1) 기존 게이트키퍼와 내부 감시 기능

언론은 기사 작성에서 최종 출고에 이르는 과정에는 차장, 부장, 국장 등 상위직급으로 구성된 데스크의 기사 검토과정(게이트 키퍼)이 있다. 또 심의실 등 심의 기능을 통해 전체 기사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도 있다.

특히 언론사에는 노조(전국언론노조 산하 공보위, 민실위, 진실위 등) 기자협회(한국기자협회) 지회 등을 중심으로 자사 보도에 대한 비평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내부 비판과 감시 기능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제도와 틀 속에서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권적 관점에서 사건이나 사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대한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인권위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보고서 중에서 발췌)

“공정방송추진위원회가 있다. 기자들이 매일 매일 작성한 기사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공추위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기자들과 같이 논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도국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살보도처럼 강령이 없다보니까 상식 선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따질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공정보도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혐오표현의 문제를 따지기 보다는 왜 반론을 넣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치우치게 기사를 썼는지가 쟁점이다. 혐오표현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긍정적·부정적 효과,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문제점과 기사 내용에서 혐오표현을 다룰 때의 문제점에 대한 개입 및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양자 모두 97.7%가 필요하다고 혹은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이드라인 제정 시 긍정적인 효과로 ‘문제 인식 공유’,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혐오표현을 다시 생각해볼 계기’, ‘신중한 기사 작성’ 등 기자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소수자 포용’, ‘기사에 의한 소수자들의 2차 피해 제거’, ‘혐오 표현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대응하지 못했던 소수자들의 권리증진’ 등 소수자 보호의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히

모든 의견을 싣는 것이 중립적인 보도라는 형식적·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협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언론 내부의 부정적 인식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가 우선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자칫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체 게이트 키핑에는 기자 또는 데스크의 독선적 주관에 개입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언론의 협오표현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3. 언론도 변하고 있다

1) 자살보도 변화(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2004년 10월 제정)

죽음의 방식은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며 언론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베르테르 효과)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살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해서는 안된다.
-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는 안된다. 등등

이밖에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재난 보도준칙,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평화 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등 제정

2) 젠더 의식 변화

- 남성 중심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자도 독자도 남성이 당연하다는 듯 사용해왔던 만형, 큰누이 등 ‘남성 중심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쓰이는 ‘가족 호칭’, ‘사적 호칭’을 배제한다. 스포츠 여성 복식조도 ‘자매’(예, 한국 남매 금빛 스매싱)가 아니고 혼성 복식조도 ‘남매’(예, 양궁 남매 잇단 금메달)가 아니다. 공적 인물을 다루며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의 이름을 불필요하게 부여하지 않는다.
- ‘여성’임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경계한다. ‘빙속 여제’, ‘은반의 여신’, 여대생, 여경, 여검사, 여직원 등 굳이 여성임을 강조함으로써 그 업적이나 전문성을 가리지 않는다.



3부: 교육현장과 혐오표현

발표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이은진(서울발산초등학교 교사)

패널 김영준(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변예진(아수나로, 불꽃페미액션 회원)

이주현(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이은진(서울발산초등학교 교사)

1. 학교의 혐오표현 실태

혐오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모욕하거나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사람들의 입에 ‘여성혐오’가 오르내리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학생들이 혐오표현에 노출되고 있다는 뉴스나 기사가 곳곳에서 등장했고, 실제로 혐오표현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아래 <표1> 참조).

<표1> 초중고등학교 혐오표현 유형별 발생빈도

출처: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단위: %)

혐오표현 유형	항상 사용된다	자주 사용된다	가끔 사용된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표현	3.3	26.7	38.3	23.3	8.3
소수자를 멸시, 모욕, 위협하는 표현	15.0	45.0	23.3	11.7	5.0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1.7	18.3	28.3	33.3	18.3

이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혐오표현은 차별을 선동하는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거나 멸시, 모욕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상황 1>

“**이 얼굴은 까매! 이빨만 하애! 알고보면 아프리카 감둥이!”

이 노래는 학생들이 놀이처럼 만들어 부르던 것으로, 처음 노래가 만들어졌을 당시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이는 피부색이 어두울 뿐,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아니었다. 하지만 점차 노래가 유행처럼 퍼지자, 실제로 피부색이 어둡고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가 노래가 불리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학생들은 그냥 재미로 부른 것이지, 비하나 놀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상황 2>

“우리 반에 특수, 개 있잖아요. 개네 엄마가 이번 체험학습에 개도 가겠다고 하네요. 어찌죠?”

“솔직히 좀 염치가 없는거지. 답임이 개 하나만 챙길 수도 없고, 반 전체를 챙겨야하는데.”

발달장애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교사들의 이야기는 이후, 특수학생 전반에 대한 언급으로 확대되었다. 장애학생 배려하느라, 다른 ‘일반’ 학생들이 역차별 받는다, 통합교육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러니 ‘그런’ 애들은 그냥 특수학교에 모아 놓는게 그런 애들을 위해서라도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었다.

<상황 3>

“이번에 예멘에서 난민들 엄청 들어왔잖아요. 만약 난민 인정되면, 학교에도 영향이 있겠죠? 다문화 학생들 엄청 늘어나고?”

“어휴, 다문화 많은 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야. 급식 메뉴도 뭐는 된다, 뭐는 안된다 그러면서 민원 엄청 많다고 하고.”

“그런 학교가 돈은 엄청 많대. 다문화 교육 지원에, 이중언어 강사 지원에, 예산 엄청 많이 나와서 쓰느라 힘들다더라. 그게 다 누구 돈이겠어? 우리가 낸 세금이지. 역차별 아니야? 그거?”

이상의 사례에서 보면, 학교의 혐오표현은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의 혐오표현은 직접적인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유형보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확산하거나 소수자를 비하, 멸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도덕적 언행을 강조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절차나 법률의 강화에 따라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의 말에 대해서는 ‘언어폭력’의 관점에서 대응,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기관이라는 특성 상,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학생들은 인식과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래의 문화, 그리고 교사의 수업 등을 통해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문화, 수업, 그리고 또래 사이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확산이나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의 사용이 많이 드러나는 점은 위험하다.

둘째, 학교의 혐오표현의 상당수는 재미나 유행어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영향 및 또래 문화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은 생각은 학생들이 혐오표현의 사용을 일종의 유희나 유행어로 받아들이기 쉽도록 하였다. 유튜브나 개인 SNS의 사용에 익숙한 학생들은 혐오표현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 교사의 경우에도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난다¹⁸⁾.

다만, 최근에는 단순히 재미나 유행어로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넘어, ‘그렇만 하기 때문에’ 혐오한다고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혐오표현의 사용을 지적할 경우,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요”, “진짜 장애인한테는 그런 말 안써요”, “꼴페미같은 애들은 그런 소리 들어도 싸요” 등의 말을 하기도 한다. 교사들 역시, 교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실제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범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난민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등의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 수가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학교의 혐오표현은 종종 공정성과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왜곡되어 표출된다. 위의 상황 2, 3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은 흔히 장애나 다문화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적극적인 차별 시정조치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비하, 멸시의 표현이 드러날 수 있다.

넷째, 학교의 혐오표현은 단순히 학생들의 언어사용 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학교 내 혐오표현 발화자는 교사인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스쿨미투가 대표적인 예이다. 학교의 혐오표현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교실 수업의 장면에서 드러나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한 발화, 혹은 수업 과정에서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교사의 발화일 수도 있지만, 간혹 교과서나 교재, 시청각자료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다.

18) 서울의 모 고등학교의 사례로, 한 교사가 여학생 교실에서 ‘보이루’라고 인사를 건넸다가, 여학생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음. 교사는 학생들이 인사말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을 뿐, 해당 낱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해명하였음.

2. 학교의 혐오표현 대응의 필요성-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민주시민성, 인간다운 삶,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등이 우리가 추구할 교육이념이자 방향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시민성과 인간다운 삶,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다양성의 존중과 반차별 등, 인권의 가치에 터해 있다. 즉, 학교는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구현하는데 그 목표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의 인권 지향성은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UN의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학생이라도 안전하게 머무르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없는 학교의 문화와 풍토를 구현해낼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학교의 혐오표현은 학교의 교육활동이 인권의 가치에 터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반차별, 반편견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전제를 무너뜨린다. 제레미 윌드론은 혐오표현이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공선(public good)’을 파괴’한다고 말한다.

학교가 다양성을 파괴하고 소수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혐오표현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소수자 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지 않게 되며, 이는 해당 학생의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의 상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인관계 기피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가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적극적으로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표현의 문제에 그치지 않게 된다. 혐오표현이 용인되는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도덕성이나 사회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기본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육인류학에서는 교육을 ‘문화의 전승’이라고 정의한다. 교육은 교과서나 교사의 수업으로 구현되는 공식적인 교육과정 외에도 학교 문화, 혹은 학교 풍토에 뿌리를 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즉,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학교의 물리적 조건이나 상황 등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우고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혐오표현은 단순히 사안 처리 절차의 마련, 예방교육의 실시 등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학교의 문화를 친인권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처벌 중심의

법적 규제보다 공동체의 의지를 모으고 문화를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 중심의 자율 규제 접근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가이드라인 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가치는 완성된 결과물에 있지 않다.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가치는 이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학교의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이고, 해당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 시간을 들여서 가이드라인의 문장을 만들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혐오표현의 해악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없는 학교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혐오표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방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다.

3.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흔히, 학교의 혐오표현 문제는 주로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생활 습관의 관점에서 접근될 때가 많다. 언론의 뉴스만 봐도 그렇다. 다음은 2017~2018년 사이에 나온 기사의 제목 중 일부이다.

초등생 '욕설 영상' 유행..인터넷 윤리교육 '시급'¹⁹⁾
 맘충, 틀딱충, 급식충... 초등 교실에서 혐오가 자란다²⁰⁾
 교실에 도사리는 ‘여혐 괴물’... 성적보다 급한 ‘진짜 성교육’²¹⁾
 교실 속 오가는 성차별, 혐오표현... “아이들 유행어처럼 사용해”²²⁾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혐오표현 사용과 관련하여 흔히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미디어 과몰입, 학생 개인의 인성 등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성교육 강화 등이 그 대책으로 언급되곤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혐오표현 문제를 이렇게만 인식할 경우, 적절한 예방이나 대응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19) EBS 뉴스 2017.08.23. 방송 <http://news.ebs.co.kr/ebnews/allView/10741237/N>

20) 헤럴드경제, 2017.10.24.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06267>

21) 경인일보 2018.02.09.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208010002775>

22) 국민일보 2018.06.29.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80445&code=61121111&cp=nv>

시행되는 혐오표현 예방 및 대책은 종종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운동’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때, 혐오표현 예방 및 대책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장면은 특정 낱말이나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 벌칙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방식은 혐오표현 문제의 본질을 빗겨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이 되기도 어렵다.

학교의 혐오표현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은 학교의 혐오표현 실태 및 대응법을 왜곡할 수 있다. 학교의 혐오표현을 학생의 문제로 한정시키게 되면, 학교가 차별없는 친인권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학생들의 선도, 감시 및 처벌의 방식으로 기울여 지기 쉽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는 교사의 발화 및 수업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학교의 혐오표현 문제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며, 교장·감 등 학교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청 등 상급기관 전부의 문제이며, 학교의 각 구성원은 친인권적 학교문화의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동반자이다.

가. 학교장 등 관리자의 역할

학교장 등, 관리자는 대체로 학교를 통솔하는 책임자이자, 외부에 대하여 학교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선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의 내외부를 향하여 혐오표현에 반대하고, 다양성 존중과 반차별의 가치를 명확히 선언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장 등 관리자, 학교의 대표자가 혐오표현에 대해 침묵한다면, 이는 곧 혐오표현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과 지지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교사의 역할

간혹, 언론 등에 의해 교사는 학생인권의 침해자이자, 혐오표현의 주된 발화자로 인식될 때가 있다. 많은 경우, 교사들은 이러한 묘사에 대해 분노하고 ‘그럴 만 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학생을 탓하는 반응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변명하기 전에,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교의 친인권적 문화 형성의 관점에서 행동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교사 스스로가 자신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로서가 아닌,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옹호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학교의 혐오표현 문제를 좀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에게 혐오표현을 발화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사는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퍼뜨리거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수업의 장면에서나 생활교육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학생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혐오표현 예방교육은 가급적 외부강사를 통해 일회성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수업 재구성을 통해 일상의 수업 속에 녹여내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인권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범교과 수업과 적절히 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다. 학생의 역할

학생은 혐오표현 예방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학생은 학교의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주체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학교의 친인권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다. 흔히, 학교의 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학생의 참여는 실제로 보장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학생이 최대한 많이 이 과정에 참여할수록, 공동체의 논의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으며, 혐오표현 예방의 효과 또한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학생은 학교의 혐오표현 실태를 감시하고 문제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선후배 사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 친구 사이에서 드러나는 혐오표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 장면에서 발화되는 혐오표현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때, 학생의 문제제기가 단순히 불만의 토로나 ‘예의없는 반항’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사 역시, 학생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고 해명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라. 교육청 등 상급기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아무리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학교의 자율규제가 의미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혐오표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기 위한 근거나 규정이 없을 경우,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의 자체적 조치가 실제적인 구속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될 경우, 학교마다 서로 다른 맥락과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고정된 매뉴얼을 제공하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4. 혐오표현 대응, 구체적인 접근 방법 및 사례

가. 규정 개정 시, 혐오표현에 관한 조항 포함하기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마음을 모아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율 규제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안타깝지만,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은 커녕, 현재 있는 규정들도 구성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와중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의미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꽤나 의문스럽다.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학교에 있는 규정-학생생활규정, 학칙, 3주체 협약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는 생활규정이나 학칙 등에서 ‘언어폭력’의 문제, ‘공동체 존중’의 가치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혐오표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대체로 주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심지어 3주체 협약의 경우에도 학부모나 교사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간단히 적혀있을 뿐, 상당 부분이 주로 학생의 행동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혐오표현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규정을 개정하여 혐오표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반드시 그 구속력과 영향력이 교사 및 학교 구성원 전체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혐오표현을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 수업하기

학교의 시간과 공간은 수업을 중심으로 짜여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 역시, 수업의 장이다. 교과 통합, 혹은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을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보는다면, 학교 내 혐오표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 때에도 주의할 점은,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생이 참여하여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미리 방식이나 내용을 세팅한 뒤, 학생이 몸만 움직여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그친다면, 학생이 직접 혐오표현에 대해 고민하고 부딪혀 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 수업은 가급적 학교의 전 교사, 혹은 같은 학년의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수업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체크리스트는 교사가 스스로 본인의 수업이나 생활교육, 업무 수행의 과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음의 예시를 참조하면 좋겠다.

- 수업에 활용하는 동영상이나 자료에 인종, 성, 타문화, 장애 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 수업 자료나 내용이 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수업의 내용이나 주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인종, 성, 타문화, 장애 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 교사의 발언이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 학교의 행사(체험학습, 운동회 등) 계획에 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 외에도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다. 혐오표현 문제는 덮어두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기 보다, 꺼내어 함께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무엇보다, 혐오표현은 처벌이나 금지의 방식이 아닌, 친인권적 문화의 형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UN인권고등판무관인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의 말로, 짧은 글을 맺는다.

“어린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존중과 평등, 정의라는 인권의 기본 가치를 배우고 체험해야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교의 모든 교과서, 교육과정, 교육정책, 교수법,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인권의 가치가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

김영준(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1. 교육청과 학교의 혐오표현 대응 실태

- 혐오표현관련 권리구제예

가. 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한 사안

담임교사가 수업시간 중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차이나”라고 부른 적이 있고, 이를 본 학급 학생들이 “선생님 여자 차이나도 있어요. ○○○도 차이나예요.” 라고 발언하자, 또 다시 “○○○ 어린이도 차이나였구나”라고 말했다는 사안임

→ 피신청인에게 인권관련 직무연수를 부과 권고

해당학급을 대상으로 차이와 차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전문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진행할 것 권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2017-05)

나. 교사가 교과 수업 내내 동성애 관련 폭력적인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을 한 사안임

교사는 학교수업시간에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다는 사안임

→ 피신청인을 포함한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권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2017-03)

다. 여성에 대하여 차별적 발언을 한 사안

해당교사가 여학생의 몸무게나 자세 등을 지적하거나 외모에 비해 행동이나 지적 수준이 낮다는 식의 발언을 수차례 한 사안임

생리결석을 한 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 반만 여자고 다른 반 애들은 남자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임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여 집단 내 소통이나 서로간의 협력을 어렵게 한다(펜스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임

→ 대상기관(학교)에 차별적 발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교직원 인권교육 권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2018-05)

2.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대안의 방향과 한계

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개정

2017. 9. 2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혐오표현금지’ 조항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

2017. 10. 25. 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 발송

- 교직원용 안내문
- 학생 및 학부모용 가정통신문

■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그 소수자가 속한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소수자 :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장등이 주된 피해자입니다.

■ 혐오표현 예시

- 차별을 조장하는 호칭: “다문화”, “차이나”, “(장)애자”, “김치녀”, “된장녀” 등
-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키는 표현: “○○(특정국가) 사람들은 냄새난다”, “장애인은 복지예산을 축낸다” 등
- 기타 조롱(경멸)의 의미를 담아 “게이나?”, “레즈나?”, “장애인이나?”라고 묻는 것, “오크녀”, “똥녀” 등 여성의 외모에 대한 발언 등

3.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바라는 것

가. 교사의 역할

(1) 교사에 의한 혐오표현금지

교사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될 수 있고, 학생들 또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에 의한 소수자 혐오표현은 더욱 금지되어야 합니다.

(2) 혐오표현금지에 대한 학생교육

교사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말도 폭력이 될 수 있음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이 소수자에게 미치는 해악성, 인간의 다양성 및 차이·차별의 이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할 권리에 대해서 교육하여야 합니다.

나. 학교장의 역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소수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혐오표현이 차별 행위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천명해야 합니다.

다. 학생, 학부모의 역할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혐오표현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학생들에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될 수 있고, 학생들 또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말도 폭력이 될 수 있음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 혐오표현,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일

변예진(아수나로, 불꽃페미액션 회원)

1. 구조 속에서의 혐오표현 사례, 원인과 문제점

1) (사례) 구조 속에서 경험했던 혐오표현

- 여자고등학교, 기독교 재단 설립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각각의 구조 속에서 경험했던 혐오표현

2) 혐오표현 이유: 비정상성, 사회와 학교가 다르지 않다.

- 일반적으로 정상성이란 어떤 의미인가?
- 정상적이지 않은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 학교 비청소년의 보호주의 지배: 그러나 그 보호주의도 정상적인 학생에 한해서만 적용 (학교에서 통용되는 ‘보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반인권적인가에 대한 고민)

저는 남녀공학이 아닌 여성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특정성별이 지정된 집단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이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사회와 학교에서 원하는 이상적인 여학생의 기준이 있었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쟁하는 학교 체제였습니다. 남녀공학에서 경험하는 여성혐오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여성혐오를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재단, 여성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집단의 정체성 속에 운영되는 일반적 모습의 학생 정상화 기준에 맞춰진 오래된 학교의 역사가 있었고 학생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에 학교 내 코르셋을 인지하든 못하든 감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의 역사가 만들어낸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여학생의 모습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상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학생은 학생 신분에 맞지 못하는 학생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단아, 양아치, 날라리’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신분은 비청소년에게 보호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표상됩니다. 하지만 정상 프레임에 벗어나는 학생은 보호할 가치가 없고, 비난받을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흔히 쓰이는 혐오발언에서는 양아치, 날라리 또한 정상적이지 못한 청소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비정상적인 학생으로 표명되었습니다. 이런 욕설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면 듣게 되는 욕설입니다.

2. 관계 속에서 경험한 혐오표현 사례, 원인과 문제점

1) 교사가 학생에게

- 교사가 수업 중에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혐오표현 사례 / 대응사례
- 교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 학생에게 하는 혐오표현 사례/ 대응사례
- 이러한 혐오표현의 문제점과 원인은 무엇일까?

(특정인에게)

1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께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퇴를 하라는 추천을 받았었고 2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께서는 자기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규범 안에 저와 같은 존재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비난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욕설 문화에 근본적인 혐오의 원인은 비정상성입니다.

(불특정인에게)

저는 수업시간 도중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병신이란 장애인 비하 발언과 그외 각종 혐오발언들을 적어 몇 번 있었고

그에 문제제기하거나. 대자보 같은 형식에 글을 쓰거나, 선생님께 책을 선물해드리는 등 여러 형태로 대응해보았습니다. 초반에는 선생님께서 이해하시면서 의견에 동의하셨지만, 수업 도중 문제제기는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학생과 다르게 권위가 있습니다. 교실 책상 구조만 봐도 학교 구성만 봐도 학생들과 선생님의 위치는 위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의 단어 사용 하나 하나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혐오 단어들은 학생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2) 학생들 사이

- 또래에서 사용한 혐오표현
- 원인은 무엇일까?

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온갖 욕설과 비속어를 들었고 저 또한 사용했습니다. 제가 인권감수성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혐오 표현 문화에 익숙해지고 또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곧잘 사용하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오가는 맘충, -충, 장애인, 병신, 지랄, 니애미, 느금마 등 여성혐오에 맞서 페어플레이가 이르기엔 미러링으로 사용되는 한남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왜 사용되는 걸까요? 욕설의 대부분과 근원은 약자성에서 비롯됩니다. 여성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비난과 혐오에서 생산된 욕설이 사용 됩니다. 이 의미는 욕설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약자성을 유희로 삼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한 욕설 문화 실태통계를 보면 욕을 한다고 응답한 초중고생들의 비율이 73%로 나타납니다. 그 중 25.7%는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저 별 생각 없이 사용하면서 습관화되어 쓰는 혐오표현이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저도 혐오표현, 욕설, 비속어, 약자성을 공격하는 단어들을 사용했고 사용했던 당시 내가 왜 사용했던 것일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그 단어가 혐오표현인지도 몰랐으며 누구나 사용하고 문제되지 않기에 모두 다 같이 사용하게 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3) 그 외 혐오표현 경험

- 일반적으로 청소년, 학생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 경험과 사례
- 일상화된 혐오표현에 노출되는 사람들(청소년 포함)
- 이러한 혐오표현의 문제점

또래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서 사용되는 욕설 병신, 장애인, 김치녀, 된장녀 등은 사회에서 세워놓은 정상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병신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사전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의 또 다른 의미인 단어가 욕설 문화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일반'인, '정상'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비난받을 대상임을 의미하며, 정상성에 벗어나는 것에 대한 혐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혐오 표현 문화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사용하곤 합니다.

3. 혐오표현에 대응방법

1) 학교, 교사, 학생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2)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

학교생활을 하면서 혐오 표현을 듣게 되면 즉각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속되면서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는 주변이 생겼고, 사용 빈도가 줄어들기도 하며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저를 신경 쓰면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신경 써야 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들이 혐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또래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지 그게 혐오표현인지 아닌지, 대부분은 비하하거나 혐오할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반응이었고, 그게 어찌됐든 맞는 말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것은 너무 버거운 싸움임을 느꼈고 이에 대응하여 학교 내 성평등 교육과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사용하는 혐오표현의 근본적인 예방방법도 사범대 교육, 직장 교육에서 실행하는 젠더 강의, 인권 강의 필수 수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게 되면 분명히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것 입니다. 육설 문화에 중요한 부분인 ‘공유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점차 성평등적, 인권친화적으로 변할수록 혐오표현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인권단체에서 실행되는 ‘약속문 만들기’가 각 학교, 학급에서라도 학생들끼리 직접 제작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문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표현에 신경을 쓸 수 있고, 서로에게 곤란하거나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외 인권친화적, 성평등적, 혐오 표현에 관련된 책을 더 쉽게 열람하고 접근가능성이 높게 수집해야 학교 내 도서관에서 수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당시에는 대자보, 혐오표현 방지 메모지, 문제제기 등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 힘들었지만 이제야 보니 개인과 집단의 힘은 불균형하기에 학교 외 각 교육 공동체에서는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경험들은 저만 겪은 경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구조로 많은 학생들은 혐오 표현에 노출되고, 피해를 받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는 일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입니다. 정치적인 힘은 개인 혼자서 바꿀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크고 작은 혐오 표현의 대응방법이 실행되길 바랍니다.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실태와 대응

이주현(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우연히 내 주위를 지나가는 장애인을 대할 때의 상식적인 반응은 괜히 쳐다보거나 피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주춤거린다거나 유심히 바라보는 것은 장애인이건 아니건 간에 몹시 불쾌한 경험이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곧잘 한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남에게 아무런 행동이나 말을 툭툭 내뱉는다. 그것은 대체로 노골적이지 않은 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기에 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서글프다. “너 왜 그렇게 똥똥해?” 라고 물으면, 뭐 어찌라는 건가. “넌 남자인데 왜 그와 사귀지?”라고 하면 또한 뭘 어찌라는 건가.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이 얼마나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인 표현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인정하지만, 그런 중요한 생각을 대부분의 일상 속에서는 잊은 채로 지낸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더 우수한 실력으로 초·중·고를 마치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진입한 뒤, 안정적인 직장을 얻거나 큰돈을 버는 것이다. 공동체의 연대를 통한 공생의 번영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대학 졸업장으로 경쟁에서 승리하여 기득권층으로 이동하려는 절대 욕망이 교육현장 특히 대학이 진정 추구한다는 진리와 정의, 사랑과 봉사의 구호 속에 감춰져 있다. 그런데 사실 더 좋은 대학과 덜 좋은 대학의 구분은 현실에서 매우 명확하다. 대학은 대학이란 이름으로 평등하지 않고 차별적인 위계질서 속에 존재한다. 그 안에는 차별과 혐오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자라나며 결과적으로 대학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많은 이들이 아는 것처럼, 「대학서열 시(詩)」라는 게 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동건홍 국승세단 광명상가 한서삼’이라는 식이다.

대학을 구성하는 한 공동체 안에도 신분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 최근 강사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대학의 학문공동체는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강사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직원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구분되고, “한국의 대학에서 ‘직원 위에 교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당연시”²³⁾ 된다. 학생 사회의 차별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벌레 충(蟲)자를 활용한 용어들이 혐오와 차별을 생산하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을 일컫는 ‘지균충’, 수시 입학생이 정시에 비해 점수가 낮다는 맥락의 ‘수시충’, 본교 캠퍼스 학생들이 분교 학생을 일컫는 ‘분캠충’, 편입생을 일컫는 ‘편입충’ 등 벌레같은 인간들이 대학캠퍼스에 넘쳐나는 것이다.

대학이 사회의 현실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혐오와 차별이 새삼스럽게 작동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초·중·고·대학을 이어오는 연속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혐오와 차별을 무분별하게 드러내는 청년이 있다면 그 잘못을 꼭 짚어 그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그 중 많은 것들이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은 가르침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부모나 학교 안팎에서 주로 배운 것은 ‘다른 인간과의 경쟁’이었지, ‘인간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이미 부모 세대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는 이질적 존재들이고, 그들은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에 관심도 없고 타인의 일에 대해서도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상관하는 일도 별로 없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제 대학을 둘러싼 혐오와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대학에서도 혐오적 표현과 차별적 행위들이 바깥 사회에서 벌어지듯이 별반 다르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19가지²⁴⁾ 중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침묵하게 대립하는 항목이다. 대학 내에서 ‘성별에 따른 혐오와 차별’은 성고충 전담창구를 통해 해결책이 정비되어 있는 반면, ‘성적 지향’이란 항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도 해결책이 요원하다.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학생·소수자 위원회(일명 “학소위”)’라는 학생인권 자치단체들이 대학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0년대에 들어 대학 내 성소수자 담론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일부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성소수자가 당선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서울대는 2015년 학소위를 신설했고, 이후 고려대, KAIST, 포항공대, 이화여대 등에 생겼다. 이들 단체들이 비록 ‘성 소수자’가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23) 서남표(2013), 『카이스트 전 총장 서남표 한국교육에 남기는 마지막 충언』, 21세기북스, 320쪽

24) ① 성별 ② 종교 ③ 장애 ④ 나이 ⑤ 사회적 신분 ⑥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주 거주지 등) ⑦ 출신 국가 ⑧ 출신민족 ⑨ 용모 등 신체조건, ⑩ 혼인여부(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⑪ 임신 또는 출산 ⑫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⑬ 인종 ⑭ 피부색 ⑮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⑯ 형 효력 실효된 전과(前科) ⑰ 성적(性的) 지향 ⑱ 학력 ⑳ 병력(病歷)

보호를 내걸었지만, 현실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성적 지향'에 대한 지점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의 일부 대학에서 학소위 단체는커녕 기존의 성소수자 동아리의 활동에 대해서도 학교당국이 비협조적이거나 탄압을 한다.²⁵⁾ 이처럼 '성적 지향'은 여전히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세대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연세대는 올 가을 「인권과 연세정신」이라는 1학점짜리 온라인 교양 기초과목을 개설했다. '인권과 노동' '인권과 아동' '인권과 장애' '인권과 난민(성평등)' '인권과 젠더' '인권과 환경, 생명' 등 다양한 주제의 13 주짜리 과정이며, 이번 2학기에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학부 신입생 4천여 명이 전부 수강해야 한다. 8월 초에 이런 내용이 언론에서 소개되자 '연대사모'(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라는 단체가 8월 13일 대학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재학생과 학부모,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연대사모는 “연세대가 2020학번 신입생들부터 졸업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인권과 연세정신」이라는 온라인 강의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 건학이념에 반하는 젠더이데올로기와 무차별 난민 수용 정책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며 “특히 인권과 젠더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는 극단적 남성혐오 페미니즘 단체인 메갈리아를 공개적으로 두둔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²⁶⁾

이러한 장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19가지 차별행위에 따른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준다. 결국 현재의 대학 캠퍼스는 불안정하게나마 선언적 수준의 근거를 갖고 청년 세대의 높아진 인권의식과 그 응답으로 결성된 '학생·소수자 위원회(학소위)'를 승인하거나 보호 또는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학교 내 기구가 바로 인권센터이다. 대학 내 인권센터는 2012년 중앙대를 시작으로 많은 대학들이 설치하거나 설치를 준비 중이다. 인권센터의 등장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구라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좀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1월 4일의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

25) 2015년 숭실대 성소수자모임 '이방인'이 성소수자의 결혼식 관련 다규 영화를 상영하려다 학교 쪽에 의해 제지당했다. 또한 한동대는 2017년 12월 미등록 학생단체가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제하의 강연회를 강행했고, 학교는 해당 학생들을 징계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이에 국가인권위는 2019년 1월 7일 “학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대관을 불허한 것이 집회의 자유 침해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했지만, 두 대학은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불수용)한 바 있다.

26) “연세대는 건학이념 무시하는 '젠더 인권교육' 필수과목 지정 취소하라” 펜앤드마이크, 2019/8/19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7> (2019/8/25)

고」 결정문을 통해서 대학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인권위는 ‘인권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하면서 대학원생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할 것을 정책 권고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노웅래 국회의원은 2017년 7월 27일 ‘대학인권센터 설치의무화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때만 해도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학원생 인권 침해의 구제가 쟁점이었고 법안 발의 과정에도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가 함께 참여했다. 그런데 2018년도 1월 미투가 시작되면서 쟁점이 바뀌었다. 2018년 3월, 김부겸 국회의원 외 20명 역시 비슷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제안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즉,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양성평등 문화 정착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아무튼 대학 내 성고충 전담 기구가 생긴 지는 20년이 되었지만²⁷⁾, 성고충 전담자들의 형편이 나아지진 않은 채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의 현실을 보았을 때, ‘인권센터’는 신설의 형태가 아니라 성고충 창구의 용도를 다기능으로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많은 대학들은 혐오와 차별의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새롭게 구하지 않고, 오로지 성고충 상담창구의 오랜 경험에 기대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휴대폰 전문매장에서 휴대폰만 하루종일 팔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종합가전매장의 영업사원이 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가 2018년 실시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담인력은 학교당 평균 0.9명이고, 평균 재직년수는 3.68년이었다. 이는 일반대 171개, 전문대 130개 등 312개교를 대상으로 한 달가량 온라인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들 전담인력 중 많은 인원이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의 성고충 창구들은 혐오와 차별의 이슈가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떠안고 있다. 그 중에는 올해 7월 16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등장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된다. 단지 고충을 처리하는 경험과 절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들을 떠맡고 있다.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중인 전국의 인권센터들은 거의 대부분 성고충 창구를 포함하고 있다. 인권과 성평등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학 중에서는 중앙대학교가 가장 먼저 인권센터를 설치(2012.3.12.)했다. 당시 초대 센터장을 맡은 이나

27)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 부산대 등이 성희롱 고충창구를 두었다. 2000년 교육부가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대한 학칙 규정 개정과 고충전담창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연세대, 고려대(2000년), 한양대, 이화여대(2001년), 서강대(2002년) 등이 차례로 관련 고충창구를 설치한 바 있다.

영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해(2011) 성평등 상담소에 접수된 사안 가운데 33% 정도가 인권과 관련된 폭언, 차별 등의 내용이어서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센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²⁸⁾고 말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인권센터가 생겼고, 2013년에는 충남대, 2014년 KAIST 등에서 센터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인권위가 집계한) 전국 대학 중 인권센터를 설치한 대학은 47개²⁹⁾에 달한다.

하지만 성고충 창구와 인권고충 창구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다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A대학 사례로 대신하겠다. A대학은 인권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인권센터를 신설한 뒤, 성평등상담소와 장애학생지원실, 심리상담소 등을 센터 산하로 재편성했다. 그리고 인권센터 산하에 인권상담소를 새로 설치했다. A대학 인권센터는 학생상담, 장애학생지원, 성평등상담, 인권상담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2019년에 이르러 이들은 다시 분리되었다. 심리상담소는 학생상담센터로, 성평등상담소는 성평등센터로,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돌아간 것이다.

A대학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대략적으로 필자가 들은 바를 정리하면 이렇다. 이른바 학생상담센터는 상담에 초점을 둔 심리지원 활동을 통해 오랜 기간 전통적인 고유영역을 확립하고 있으며, 차별 구제 등의 역할보다는 개인의 복지에 초점을 둔 영역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차별개선 등 인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학교기관의 역할은 학생복지 쪽에 더 가까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관련 업무 비중이 크다. 무엇보다도 성평등센터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피해 구제활동과 젠더 기반 폭력의 예방교육에 집중하는 별도의 특별한 기구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러한 역할을 20년 가까이 고유영역으로 만들면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인권센터는 인간 존엄과 가치에 관한 영역을 아우르는 가장 큰 개념의 기구이기는 하지만, 무엇을 인권침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정체성이 뚜렷한 고유영역을 지닌 업무기관들을 하나로 묶어 놓는 것은 개별 역할 수행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내 인권센터의 설치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으로 적합한 것은 틀림이 없겠으나, 그것은 20년 역사의 성고충 창구와 비교했을 때, 고충상담 방식과 조사

28) “중앙대, 국내 대학 최초 ‘인권센터’ 설립” 중앙일보, 2012/3/12 <https://news.joins.com/article/7595147> (2019.8.25.)

29) “인권위,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2019/3/27.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3938> (2019/8/25)

면담 기법, 신고가능 사건, 사건조사기간. 위원회 구성, 위원회 결정에 따른 구제책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대학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 무관용주의를 정착시킨 성고충 창구의 기능이나 절차와는 다른 단위의 별도 방식으로 인권센터의 설치가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끝)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

| 인 쇄 | 2019년 8월 27일

| 발 행 | 2019년 8월 27일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670 | F A X | (02) 2125-0932

| 웹사이트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디자인모장

| 전 화 | (02) 2278-1990 | F A X | (02) 2278-1992

ISBN 978-89-6114-691-3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